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2017. 12

강성호·류건식·김동겸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올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급속한 고령화 과정을 통해 202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요 등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연금이 여전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대책은 가입측면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수급측면에서는 수급권 보호, 연금화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완전히 수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퇴직연금의 외연이 확대된 상태에 있고, 향후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환경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2

1. 연구배경: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 12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14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 15

II.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문제점 / 17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제 현황 / 17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 33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 44

1.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 45
2.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 56

IV. 퇴직연금 세제효과 분석 / 84

1. 소득계층별 가입유인 효과: 가입시점효과 분석 / 84
2.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른 효과 / 87
3.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 97

V. 퇴직연금 세제 개선안 / 106

1. 가입단계 / 106
2. 수급단계 / 110

VI. 맺음말 / 113

| 참고문헌 | / 115

| 부 록 | / 120

부록: I.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120

부록: II.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와 소득세율 / 123

부록: III. OECD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전망 / 125

부록: IV. 퇴직소득세 산출 및 세제혜택 / 126

부록: V.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의 연금세제 지원액 산출 / 127

■ 표 차례

- 〈표 II-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 18
- 〈표 II-2〉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 19
- 〈표 II-3〉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기본 원칙 / 22
- 〈표 II-4〉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가입/운용단계 / 25
- 〈표 II-5〉 가입단계에서의 퇴직연금 세제: 세제혜택 / 25
- 〈표 II-6〉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수급단계 / 27
- 〈표 II-7〉 수급단계에서의 퇴직연금 세제: 과세 / 27
- 〈표 II-8〉 퇴직연금 납부액의 소득공제(2012년, 2013년 귀속분) / 28
- 〈표 II-9〉 퇴직연금 납부액 및 세액공제액(2014년, 2015년 귀속분) / 29
- 〈표 II-10〉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 32
- 〈표 II-11〉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 현황(2016년 상반기 기준) / 32
- 〈표 II-12〉 사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률 / 35
- 〈표 II-1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및 가입률 / 37
- 〈표 II-14〉 소득계층별 ·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비중 / 38
- 〈표 II-15〉 종사자 규모별 활동/소멸 기업 수 현황(2014년) / 40
- 〈표 II-16〉 종사자 규모별 활동/소멸 기업의 종사자 수 현황(2014년) / 41
- 〈표 II-17〉 문제점별 대응방법 / 43
- 〈표 III-1〉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체계 / 45
- 〈표 III-2〉 주요국의 매칭기여제도 운영 현황 / 47
- 〈표 III-3〉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지원 형태 / 49
- 〈표 III-4〉 사적연금에 대한 급여액 지출과 세제혜택 수준 / 54
- 〈표 III-5〉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운영단계별 세제혜택 / 55
- 〈표 III-6〉 독일의 퇴직연금(Betriebliche Altersvorsorge) 유형별 특징 / 59
- 〈표 III-7〉 주요국의 세제혜택 요건 / 60
- 〈표 III-8〉 독일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주체에 따른 비중 / 64
- 〈표 III-9〉 호주의 소득 수준 및 연금납입액별 정부지원액(2016~2017년) / 67
- 〈표 III-10〉 일본 개인형연금제도 납입 한도액(월 기준) / 68
- 〈표 III-11〉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 69

■ 표 차례

- 〈표 Ⅲ-12〉 네덜란드의 연금지급단계에 적용되는 소득세 / 69
- 〈표 Ⅲ-13〉 주요국 사적연금제도의 급여 개시연령 및 지급 방식 / 75
- 〈표 Ⅲ-14〉 주요국의 급여수급 방식에 따른 세율 차등화 / 76
- 〈표 Ⅲ-15〉 주요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 77
- 〈표 Ⅲ-16〉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요국 세제정책 활용 사례 요약 / 83
- 〈표 Ⅳ-1〉 퇴직연금 세제혜택 방식변화 효과(2013년 vs 2014년 귀속분) / 84
- 〈표 Ⅳ-2〉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지축 대체금융상품 가입변화
(14년/13년) / 85
- 〈표 Ⅳ-3〉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 확대 효과(2014년 vs 2015년 귀속분) / 87
- 〈표 Ⅳ-4〉 사업장 규모별 · 소득계층별 퇴직연금 가입 비중 / 90
- 〈표 Ⅳ-5〉 퇴직연금 도입 확대 시 소득계층별 가입률 변화 / 91
- 〈표 Ⅳ-6〉 퇴직연금 확대단계별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적립금 1억 원 동일 / 93
- 〈표 Ⅳ-7〉 퇴직연금 확대단계별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실태조사 활용 / 96
- 〈표 Ⅳ-8〉 사업체 수 및 종사자지위별 종사자 수(2015년) / 98
- 〈표 Ⅳ-9〉 임금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률(2015년 8월 기준) / 98
- 〈표 Ⅳ-10〉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2015년) / 99
- 〈표 Ⅳ-11〉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 99
- 〈표 Ⅳ-12〉 공무원 보수 추이 / 100
- 〈표 Ⅳ-13〉 퇴직연금 가입 추가 대상자별 적용소득 / 101
- 〈표 Ⅳ-14〉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 규모 추정 / 102
- 〈표 Ⅳ-15〉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별 적립 IRP 적립액 산출 / 103
- 〈표 Ⅳ-16〉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별 연금소득 및 세제지원 효과 / 103
- 〈표 Ⅳ-17〉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별 연간 및 생애기간 지원액 / 105

■ 그림 차례

- 〈그림 I -1〉 연금세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 15
- 〈그림 I -2〉 선행연구와 차별화 / 16
- 〈그림 II -1〉 적립비율별 기업분포 / 20
- 〈그림 II -2〉 퇴직소득 수급형태 및 유형별 과세방법 / 23
- 〈그림 II -3〉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 34
- 〈그림 III -1〉 퇴직연금 과세형태별 세제혜택 규모 / 50
- 〈그림 III -2〉 매칭기여 제공이 개인퇴직계좌(IRA) 개설에 미치는 영향 / 51
- 〈그림 III -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세제정책 활용 / 56
- 〈그림 III -4〉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지출 현황 및 전망 / 57
- 〈그림 III -5〉 OECD 국가의 세제혜택 수준과 사적연금 가입률 / 63
- 〈그림 III -6〉 미국 퇴직연금 관련 제도변화와 퇴직연금시장 규모 추이 / 64
- 〈그림 III -7〉 OECD 국가의 소득불균형 변화 추이(지니계수) / 65
- 〈그림 III -8〉 추가기여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 납입액 변화 / 71
- 〈그림 III -9〉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의 자산소진 / 73
- 〈그림 III -10〉 덴마크와 호주의 퇴직급여 수급단계에서의 주요 통계 / 79
- 〈그림 III -11〉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및 적립비율 현황 / 80
- 〈그림 III -12〉 영국 NEST 제도의 보험요율 및 정부지원 / 82
- 〈그림 IV -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별 가입률 변화 / 89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Environment and Tax Reform

There is growing a concern for retirement pension schemes due to the financial burdens of public pension under the rapid ageing. In 2014,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plans for stimulating private pension” to oblige all firms' introdu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s by 2022 for establishing a stronger safety net for retire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problems and remedies of current retirement pension tax systems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We first classifies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s pension contribution phase and payout phase. Recent changes in the contribution phases are mandatory participation of workers, and eligibilities expansion. Protection of a beneficiary's right and policies to encourage annuitization are related to the payout phase.

Furthermore, we analyze (i)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tax regime on retirement pension enrollment, (ii) tax benefi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participation of workers, (iii) the impact of relaxation of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retirement pension enrollment.

We suggest a variety of tax reform to strengthen Old-age income protection. In the contribution phases, financial support reinforcement for low-income and imminent retirement classes, and financial support to reduce financial burden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are required. In pension payout phase, tax incentives to encourage accumulation of retirement assets, and reducing the tax benefits when receiving lump-sum benefits are required.

요약

I. 서론

- 공적연금의 근본적 한계인 재정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 확대, 수급권 보호 강화, 연금화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2014년 7월에 발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함

II.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문제점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제 현황

- 퇴직연금 환경변화는 크게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가입단계 환경변화는 사업장 도입 의무화,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통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짐
- 수급단계 환경변화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연금화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파산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적립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
 - 2015년부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시 세액의 70%로 경감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정책을 시행함
- 퇴직연금 세제는 2000년 EET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옴
 - 첫째, 가입·적립단계에서는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를 통해 세제 지원이 발생함
 -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세제적격)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하여 세제혜택이 발생되며, 2014년까지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던 것이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됨(2015년 이후부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확대)
 - 한편, 사용자 부담분인 퇴직급여 충당금(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수준은 2010년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6년부터는 없어짐
 - 둘째, 수급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되나, 노후소득이라는 특성과 연금화 유도를 위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음
 - 2011년 이후부터 퇴직소득에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45%에서 40%로 축소하였고, 2014년 이후 소득재분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수준별로 35~100%의 차등공제를 적용함
 -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금액의 한도(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를 확대하였으며,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집단특성별로 차등화

함(일괄 5%에서 3~5% 차등 적용)

- 연금화 강화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할 경우 2015년부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함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 가입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이 약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며,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15.7%)은 OECD 평균(21.5%)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 둘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납부 중지(혹은 해약)가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 및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 가입 확대가 추진될 경우 소득계층 및 직종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셋째,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함
- 수급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연금수급 유인이 미흡하여 향후에도 일시금 수급을 선호할 우려가 있다는 점임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적어 연금화로의 유인은 약함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1.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납입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Tax), 비과세(Exempt)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OECD 대다수 국가는 납입단계에서 납입 보험료액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수급단계에서는 축적된 연금 적립금에 대해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함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매칭기여, 보조금 지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해주는 형태이며 대다수 국가에서 동 방식을 활용함
 - 세액공제 방식은 납입보험료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공제액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임
 - 매칭기여는 호주,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또는 고용주가 납입보험료에 대응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임
 -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칭기여는 일반적으로 조세재원으로 제공되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세제지원에 해당됨
 - 보조금 지급방식은 독일, 칠레 등에서 운영되는 형태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임

- 대다수 국가가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저축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퇴직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21개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GDP의 0.2% 미만이었으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만이 GDP의 1% 이상의 세금지출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세제혜택효과는 각각 17%와 14% 수준으로,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2.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가. 정부재정 절감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활성화

-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를 축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등의 퇴직연금에 대해 아이헬보조금을 지원함
- 영국은 1978년에 기초연금제도 외에 공적연금의 기여와 급여수준을 높인 소득비례연금(SERP)을 도입과정에서 SERP에 대해 적용되었던 적용제외제도를 퇴직연금 및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연금까지 확대함
- 대다수 국가는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를 위해 소득세 미납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또한,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납입기간, 특정연령 전 은퇴 제한, 특정방식에서의 급여 인출 등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호주는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비적격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추가로 기여해 주는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비적격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 \$1당 정부가 \$0.5(연간 최대 \$500)를 추가로 지원하며,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직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단계에서 차등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 한편, 미국, 호주 등은 베이비부머 등 퇴직연령에 임박한 세대 및 중·고령층의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을 통해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등도 시행 중임
 - 네덜란드는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수급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연금수령 유도

- 주요국에서는 개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제한이나 급여지급단계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함
 -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는 59.5세가 되기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전통형 IRA 제도의 경우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하는 경우는 연방소득세 납부와 10%의 조기인출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 영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은퇴, 기대여명이 일 년 미만 등과 같은 사유 외로 55세 이전에 연금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함
- 또한, 연금화 유도를 위해 연금지급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고 있음
 - 덴마크는 소득세 최상위 과세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은퇴시점에 일시금 형태의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함
 - 호주는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적정 급여한도제를 시행함

라.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미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제도 설정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도입초기 운영비용의 50%에 한해 연간 최대 \$500 한도로 3년간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

-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해 전액 손비처리를 해주고, 신규 가입 사용자에게 대해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정부에서 직원당 ¥5,000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를 보조해주고 있음
 - 한편, 사용자가 ¥18,000 이하의 종업원의 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증액분에 대해 1년간 1/3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KiwiSaver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음
 -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사용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 \$20)까지 사용자 명의의 KiwiSaver 계좌에 납입해 줌
 - 또한, 사용자주의 경우 의무적인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액에 대응하여 직원별로 주당 \$20까지 사용자를 지원함

IV. 퇴직연금 세제효과 분석

1. 소득계층별 가입유인 효과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은 가입유인을 감소시켰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세제혜택 확대는 가입유인 증가로 이어짐
 - 퇴직연금 공제 방식 변경 전후인 2013년과 2014년 동안 1인당 세제혜택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낮아졌고 이로 인해 가입자도 감소함
 - 특히,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가입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 미흡 등으로 가입이 감소함
 -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세액공제 방식은 유지되었지만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이 700만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함

2.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 의무화 효과

-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 의무화로 1단계(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도입) 가입률은 55.3%, 2단계(100인 이상~300인 미만)에서 4단계(10인 이상~30인 미만)까지 가입률은 각각 59.4%, 65.3%, 80.4%로 증가함
 - 현행(확대 전) 전체 가입률인 53.5%에 비해 각각 1.8%p, 5.9%p, 11.8%p, 26.9%p 증가함
- 도입 의무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가입 확대 효과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가입이 먼저 확대된 후 저소득층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확대 전) 소득계층별 퇴직연금 가입률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각각 43.2%, 49.3%, 66.2%로 나타나 전체 가입률은 53.5%로 추정됨
 - 특히, 도입 의무화로 저소득층도 5단계에서는 모두 가입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도입 의무화 과정에서 5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고소득층의 가입이 높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단계적 의무화 과정에서 도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가입확률이 떨어져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음

- 한편, 현행 퇴직소득세 체계하에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효과가 커서 연금보다 일시금 선택을 선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급자가 자신의 이연퇴직 적립액(1인당 5,350만 원으로 추정) 모두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될 경우 적립액 대비 퇴직소득세 비율(퇴직급여세율)은 0.84%에 불과함
 -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될 경우 30%를 감면 받게 되면 그 비율은 0.25%여서 실질적으로 혜택 수준은 크지 않음
 - 즉,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세 비율이 낮으므로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낮음

3. 가입대상자 범위확대 효과

- 2017년 7월 26일부터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자는 7,315천 명으로 추정됨
 - 직종별로는 자영업자 1,185천 명,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989천 명,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3,706천 명, 직역연금 가입자 1,435천 명임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함
 -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연금수급액은 전체 기준으로 10

년 납부 시 74만 원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 모두 연금액이 낮아 연금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액인 222만 원이 생애 순세 제혜택이 됨

■ 모든 추가가입자가 가입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연간 1조 6,230억 원 정도 조세지원(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퇴직연금 세액공제혜택 수혜자 비율이 과세대상자의 4.2%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범위 확대에 따른 조세지원은 연간 6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V. 퇴직연금 세제 개선안

1. 가입단계

■ 가입단계에서는 OECD 수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세제지원, 저소득층 및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세사업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함

- 첫째, OECD 국가의 평균 세제지원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수준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퇴직연금 추가납부액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제 대상금액 수준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면서 연령별로 공제대상액을 차등화하거나, 현행 공제 대상금액을 상향하되 적용대상을 퇴직 직전 세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퇴직급여액 중 운전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수준 만큼 대출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주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함
 -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부 추진계획보다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추가적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야 함

2. 수급단계

- 수급단계에서는 연금형태의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노후자산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퇴직일시금 세제지원 축소가 필요함
 - 첫째, 연금화를 위해 퇴직소득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금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금의 연금계좌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민연금의 반납금 제도를 응용하여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반납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자산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둘째,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수준은 낮추어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높여,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세제혜택(퇴직소득세의 50% 이하)을 높여 연금화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배경: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로 인해 연금수요에 대한 욕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개인의 기대여명도 증가하는 장수화로 인해, 연금수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적연금의 근본적 한계인 재정문제로 인해,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01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¹⁾은 이와 관련된 국가적 관심의 대표적 표출이라고 하겠다. 동 대책은 크게 가입측면과 수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입측면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관련이 있고, 수급측면은 수급권 보호, 연금화 등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가입측면의 주요 내용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는 고용정책심의회(17. 2. 28)에서 부처 간 심의를 거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바 있고, 현재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조치와 별개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있는 모든 경제활동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입 확대 노력으로 인해 향후 퇴직연금 가입

1)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 8. 27)' 참조

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급측면에서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DB²):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에 대해 사외적립을 강화하고 있다.³⁾ 그러나, 사업자의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현행 법정 비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 사업자 유인책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 즉, 연금화(Annuitization)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5세 이상 연금수급 대상자의 수급형태를 볼 때 연금에 비해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금수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선택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영국의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화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퇴직연금 환경⁵⁾ 및 제도적 특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일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영업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었고, 향후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환경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변화가 가입뿐만 아니라 적립, 수급단계에서 퇴직연금 세제에 미칠 영향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정의됨

3) 현행 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017년 현재 확정급여(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은 80%임. 이와 관련하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는 2020년 이후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계획한 바 있음

4) '정원석(2016),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급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KIRI 리포트』, 제 404호, 보험연구원을 참조 바람

5) 물론 퇴직연금 환경은 넓은 의미에서 인구고령화, 공적연금 개혁, 소득불평등, 저성장/저금리 등 일반적 환경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여기서는 퇴직연금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적 요소(최근의 제도변화 등)에 국한하여 정의하고자 함

6)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수급시점 이전까지 납부하고(1기 보험), 그 이후 수급하는(2기 보험) 형태의 장기저축성보험 성격이므로, 가입 환경변화는 납부시점뿐만 아니라 수급시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퇴직연금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퇴직연금 세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퇴직연금 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2015)⁷⁾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퇴직연금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세제지원 확대(33.4%)가 1순위였으며, 다음으로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단순화(24.5%), 연금지급의 안정성 확보(1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세제지원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세제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가입환경만 변화할 경우 소득계층 간 가입이력 차이⁸⁾로 인해 향후 수급시점에서 연금소득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 세제 개편을 통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최근의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3장과 제4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한다. 즉, 제3장에서는 OECD 주요국들의 퇴직연금 세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환경변화 전후에 따른 가입 및 수급단계의 세제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제4장에서는 제3장 해외사례에서 도출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퇴직연금 세제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즉,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연금(IRP) 가입 확대 과정에서 제공되는 세제지원에 따른 소득보장,

7) 보험연구원(2015),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8) 소규모 사업장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제2장 참조)

재정효과 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여기서는 제2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계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동안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가입단계/연금저축세제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전의 연금세제에 관한 연구들이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 중에는 시뮬레이션 및 실증분석을 통한 심층적 연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문헌 중심이었다(정원석 2013; 류건식 외 2012). 또한, 이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퇴직연금보다는 세계적격 개인연금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성호 외 2013; 정원석 외 2014; 정원석 외 2016).

〈그림 I-1〉 연금세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문헌연구	실증/통계분석
국민연금		강성호 외(2012)
퇴직연금	정원석(2013), 이상엽 외(2015)	임병인 외(2004), 류건식 외(2012) 손영철(2014), 김수성(2014)
개인연금		강성호 외(2013), 정원석 외(2014, 201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퇴직연금 가입 확대(사업장 도입 의무화,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세제효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둘째, 가입단계의 세제효과에 국한하지 않고 수급단계의 세제효과까지 고려한 경제적 효과도 살펴보고 있다. 수급단계의 세제효과까지 고려

하는 이유는, 가입 환경변화에 따라 납부대상자, 납부액 수준, 납부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연금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수준 및 수급형태(일시금, 연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시점에 발생할 연금세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 단순 시뮬레이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재정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I-2>과 같다.

<그림 I-2> 선행연구와 차별화

- 연금세제 변화를 연금저축 중심으로 검토
- 가입시점의 세제효과(세액공제) 중심으로 분석
- 단순 시뮬레이션 수행(대표 개인 분석)



- 최근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고려한 퇴직연금 세제 분석
- 가입 및 수급단계까지 고려한 세제효과 분석
-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전체 가입자를 고려한 세제효과(예: 재정효과) 분석

Ⅱ.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문제점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세제 현황

가. 최근 퇴직연금 환경변화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시점별로 보면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입단계 환경변화는 사업장 도입 의무화,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완화와 관련된다. 수급단계 환경변화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연금화 등을 들 수 있다.

1) 가입단계 환경변화: 퇴직연금 가입 확대 추진

퇴직연금 가입 확대 추진은 사업장 도입 의무화와 가입대상자 확대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업장 도입 의무화와 관련된 퇴직연금 가입 확대 환경변화이다.

2014년 7월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⁹⁾하여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동 발의안은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 시행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고용정책심의회(17. 2. 28)에서 부처 간 심의를 거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필요성

9)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가입을 강제화하는 것을 의미함

을 재확인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아래 <표 II-1>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정부에서 고려하였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2016년부터 2022년)이다. 이에 의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우선순위로 1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II-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 수 기준)

(단위: 개 소)

기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 적용대상 기업 수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자료: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 8. 27)

다음으로,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퇴직연금 가입 확대 환경변화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고 그 결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있는 모든 경제활동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조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분(적립 IRP, 적립 DC¹¹⁾)으로 추가 적립한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제화하는 사업장 도입 의무화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10) 강성호·최장훈(2017),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11) 여기서 적립 IRP, 적립 DC는 각각 IRP와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기여하는 부담분(본인 기여분)을 의미함(이하 동일)

〈표 II-2〉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현행 가입대상	개정(추가대상)
- 퇴직(일시)금 수급한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재직 근로자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근속기간 1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11)

2) 수급단계 환경변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연금화

퇴직연금 수급단계에서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연금화(Annuitization)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와 관련된 퇴직연금 환경변화이다.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는 가입유형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는데, 확정급여(DB)형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다.

첫째, 확정급여(DB)형에 대해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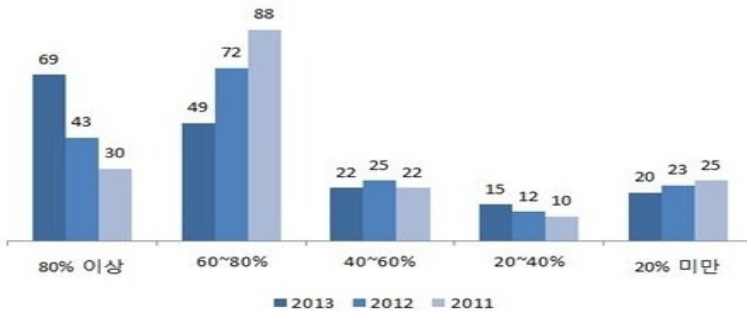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파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조정을 계획¹²⁾한 바 있다. 즉,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급여(DB)형의 최소 사외적립비율은 2017년 현재 80%이며, 2018년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상향조정 계획(안)에서는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비용부담 문제 등

12) ('14~'15년) 70% → ('16~'17년) 80% → ('18~'19년) 90% → ('20년 이후) 100%

으로 인해 현재도 법정비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대한 유인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채택한 코스피 200지수 편입 175개사 가운데 사외적립비율 60%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전체의 3분의 1(57개사)이었다. 또한 사외적립비율이 20%조차 미치지 못한 기업도 2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비상장사의 대다수가 사외적립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¹³⁾

〈그림 II-1〉 적립비율별 기업분포

(단위: 개)



자료: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4090216563237626&type=1&gubn=undefined>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는 이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수급자를 보호하는 조치이나, 미가입 사업장의 향후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즉, 사업주가 사외적립이 부담되어 과태료를 부담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미루거나 거부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권 보호는 기본적 사항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13)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4090216563237626&type=1&gubn=undefined>

성격 및 적립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장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이태열·류건식 2017).

퇴직연금과 같이 생애 전체의 근로기간에 걸쳐 적립되고 일정 시점(예: 55세)까지 인출이 통제되는 금융상품은, 일반예금처럼 인출기간의 통제가 없고 입출입이 자유로운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와 관련된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살펴본다.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4만 5천 명)의 대부분(92.9%)¹⁴⁾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함에 따라 연금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¹⁵⁾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을 통해 연금화 강화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으며, 특히 정부¹⁶⁾는 연금강제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여 일시금 인출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연금화 유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급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연퇴직소득¹⁷⁾을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시 세액의 70%로 경감된 것이 대표적이다.¹⁸⁾ 그러나 동 조치 이후에도 별다른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효성은 모호한 상황이다.¹⁹⁾

이에 더하여 이미 2013년부터 사적연금 세율은 5%에서 연령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3~5%²⁰⁾로 감소된 바 있으나, 연금화에 대한 유인이 낮아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

1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

15) 이태열·류건식(2017),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방안」, 『고령화리뷰』, 제5호, 보험연구원

16) 2014년 7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17) 퇴직 시 바로 퇴직금을 수급하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예: 55세)까지 연기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이연한 퇴직소득을 의미함(소득세법 제146조)

18)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5의3호

19)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임

20) 일반적으로 70세 미만인 경우 5%, 종신연금이거나 70대인 경우 4%, 80세 이상인 경우 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지방세 제외한 비율임). 동 세율이 적용되는 연금소득은 본인 납부액과 투자수익의 합산액임(사업주 부담분 제외)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금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퇴직연금 과세원칙 및 변천 내용

1) 퇴직연금 과세의 기본 원칙 및 체계

최근의 퇴직연금 세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퇴직연금 과세의 기본 원칙과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퇴직연금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부액은 세액공제(Exempt)²¹⁾되고 운용수익은 과세이연(Exempt)되며, 연금소득액은 과세(Tax)되는 EET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EET 방식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된다’는 연금과세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²²⁾ 한편,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손비처리되고, 운영단계를 거쳐 수급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이연퇴직소득)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연금소득세 혹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표 II-3〉 참조).

〈표 II-3〉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기본 원칙

구분	가입단계	운용단계	수급단계	과세방식
근로자	본인 부담분 세액공제(E)	운용수익 과세이연(E)	연금 또는 퇴직 소득 과세(T)	EET
사용자	사용자 부담분 손금산입	-	근로자에게 연금소득세 혹은 퇴직소득세 부과	-

주: 1) E는 Exempt, T는 TAX

2) ‘-’는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가 하나 수급권은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됨

자료: 한국투자증권, IRP 과세체계 사이트;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 개정안(2014. 8. 6); 금감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우리나라과세체계

21) 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한 기여금이 공제대상이며, '14년 이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13.2%, 지방세 포함)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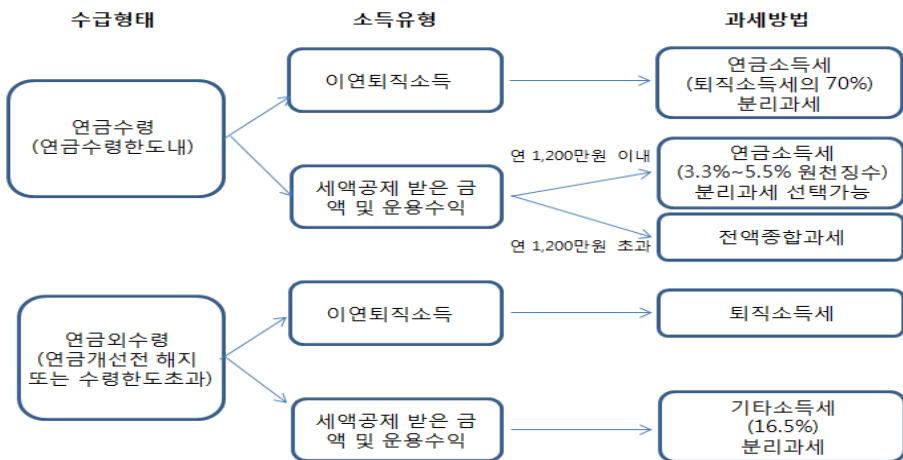
22) 세부적인 내용은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람

다음으로,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2>에서와 같이 급여수급 형태, 소득분류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사업주 부담분)과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본인 부담분 + 운용수익)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즉,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과세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되면 연간 1,200만 원 이하 이면 3~5%(지방세 포함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간 1,2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종합과세 된다.

반면, 연금 외 수령(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에도 연금형태의 수급과 동일하게 소득성격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사업주 부담분)과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본인 부담분 + 운용수익)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다만, 연금 외 수령 시 과세방법은 연금형태의 경우와 다르다. 즉,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적용받아 세제혜택이 없고,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된다.

<그림 II-2> 퇴직소득 수급형태 및 유형별 과세방법



주: 2015년 이후 수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서울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연금수급 시 과세방법; 한국투자증권, IRP 과세체계

2) 퇴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퇴직연금 세제는 2000년에 EET 원칙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그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10년 이후에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II-4>, <표 II-5>에 의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다양한 법률(조세제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관리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가 가입단계에서는 세제혜택, 적립단계에서는 과세이연, 수급단계에서는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적립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세제의 변천 내용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입/적립단계는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와 관련되며, 특히 2014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과세 및 세제혜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 납부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분(적립 IRP, 적립 DC)과 사용자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본인 부담분은 연금저축(세제적격) 납부액과 합산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되며, 2010년까지 연간 300만 원²³⁾까지 소득공제되던 것이 2011~2014년에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지원 방식이 전환되었고, 2015년 이후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7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2%²⁴⁾로 최대 84만 원에 대해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적용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인 15%²⁵⁾를 적용한다.

23) 2006~2010년 동안 연간 300만 원의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됨

24) 지방세 포함 시 13.2%

25) 지방세 포함 시 16.5%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에게 손비처리되므로 근로자와는 무관하다. 다만, 운영단계를 거쳐 수급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이연퇴직소득)으로 전환되므로 수급형태에 따라 연금소득 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세제가 적용된다. 사용자 부담분과 관련하여서는,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 총당금(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수준은 2010년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6년부터는 없어졌다. 그만큼 DB형 퇴직연금에 사외적립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하겠다.

〈표 II-4〉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가입/운영단계

구분	내용	법률근거
공제대상금액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전환	- 연 300만 원('06년~) → 400만 원('11년~) → 700만 원('15년) - '14년 세액공제(13.2%)로 전환	조특법86의2 소득세법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한도 개선 (사용자)	- 퇴직급여 총당금(사내유보) ·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 매년 5%씩 축소 (11년~): 2016년부터 없어짐	법인세법28 법인령60 ②; 법인령 제44조의2
	-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법인세법28 법인령60 ②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각년도 세법개정안, 관련세법 참고하여 재정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가입단계에서의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다음 〈표 II-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5〉 가입단계에서의 퇴직연금 세제: 세제혜택

대상	내용
근로자	- 납부액 한도: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납부액 포함) - 세액공제율: 12% (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사용자	- 보험료 전액 손비인정(16년 이후 퇴직급여 총당금에 대해 손비인정 폐지)

둘째, 수급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되나, 이 경우에도 노후소득이라는 특성과 연금화 유도를 위해 세부담이 경감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①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를 축소하고 차등화하여 왔다. 즉, 2011년 이후부터 퇴직소득에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45%에서 40%로 축소하였고, 2014년 이후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여 퇴직소득 수준별로 35~100%의 차등공제²⁶⁾를 적용하고 있다.

②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을 조정하거나 한도를 확대하여 왔다. 즉, 2013년 이후에는 공적연금소득과 구분하여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③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집단특성별로 차등화하여 왔다. 즉,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5% 적용하던 것을 2013년부터 연령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이거나 55세 이상 70세 미만에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5%, 종신연금 혹은 70대에 수급하는 경우 4%, 80세 이상에서 수급하는 경우 3%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④ 연금화 강화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2015년부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하였다.

26) 퇴직연금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인 경우 '1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를 소득공제합(소득세법48 ① 1, 2호)

〈표 II-6〉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 수급단계

구분	내용	법률근거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차등화	- 퇴직소득금액의 45% → 40%(’11년~) →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공제(35~100%, ’14년~)	소득세법48 ①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 대상: 공적연금 + 사적연금 → 사적연금(’13년~) - 한도: 연 600만 원 → 1,200만 원(’13년~)	소득세법14
연금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 일괄 5% → 연령 및 유형별 3~5%(’13년~) · 일반적/70세 미만 5%, 종신연금/70대 4%, 80세 이상 3%	소득세법129
연금화 강화	- 연금수급 시 퇴직소득세 30% 세액 경감(’15년~)	소득세법129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각 년도 세법개정안; 관련세법 참고하여 재정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수급단계에서의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다음 〈표 II-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7〉 수급단계에서의 퇴직연금 세제: 과세

수급형태	내용
연금수급	- 연금소득세 과세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세 적용 - 이연퇴직소득(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30% 세액 경감 (2015년부터 적용)
연금 외 수급 (일시금)	-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분류과세 · 사업주 부담분: 퇴직소득세 · 근로자 납입분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정리하면, 2010년 이후의 퇴직연금 세제개편 방향은 세액공제 전환을 제외한다면, 가입유인 증대, 연금화 유도 등 세부담 경감 정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퇴직연금 세제 수준

앞에서 살펴본 퇴직연금 세제 내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현행 퇴직연금의 세제혜택(가입시점) 및 과세수준(수급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입시점에서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수준

가입시점에서는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²⁷⁾를 적용하므로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귀속년도 2012~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납부액(본인 부담)의 세제혜택 효과를 살펴보았다.²⁸⁾ 2014년 이후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2012년과 2013년은 소득공제 방식에 의해, 2014년과 2015년은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세제혜택 효과가 발생된 것이다.

〈표 II -8〉 퇴직연금 납부액의 소득공제(2012년, 2013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귀속년도	공제대상		세제혜택
	인원	금액	금액
2012년	83,691	76,052 (91)	20,905 (25)
2013년	60,370	102,089 (169)	29,165 (48)

주: 1)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이므로 자신의 세율만큼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함

2) () 안은 1인당 연평균 공제대상액(단위: 만 원)

자료: 국세청, 2013, 2014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

〈표 II -8〉은 2012년과 2013년의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기간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에 의해 제공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본인의 납부액과 한계소득 세율²⁹⁾에 의해 결정된다.

27)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부담 보험료만 적용됨

28) 동 기간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부사항은 〈부록 1〉을 참조

29)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이 변화할 수 있고,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개인마다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납부액에서도 세제혜택이 달라짐

퇴직연금 가입자 중 추가적으로 본인 부담액을 납부한 가입자 수와 공제대상액(본인 납부액)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8만 4천 명, 761억 원이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각각 6만 명, 1,021억 원이었다. 이를 1인당 연평균 공제대상액으로 환산하면 2012년 91만 원, 2013년 169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의 연금세제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으므로 본인 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공제대상액에 한계소득 세율³⁰⁾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에 의하면, 2012년 퇴직연금 납부액의 세제혜택 수준은 총 209억 5백만 원이고 1인당 연평균 25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납부액의 세제혜택 수준은 총 291억 6천 5백만 원이고 1인당 연평균 48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9〉 퇴직연금 납부액 및 세액공제액(2014년, 2015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귀속연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인원	금액	금액
2014년	52,042	103,965 (200)	13,107 (25)
2015년	404,850	684,841 (169)	84,751 (21)

주: () 안은 1인당 연평균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액(단위: 만 원)
자료: 국세청, 2015, 2016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표 II-9〉는 2014년과 2015년의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기간 세제혜택은 〈표 II-9〉에서와 달리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제공되었으므로 공제대상액(본인 납부액)과 세액공제율³¹⁾에 의해 결정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본인 부담이 있었던 사람의 수와 공제대상액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5만 2천 명, 1,040억 원이었으며, 2015년 기준으로는 각각 40만 명, 6,84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1인당 연평균 공제대상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200만 원, 2015년 169만 원이다.

30) 여기서 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소득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는 38%를 적용하였음

31)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지방세 포함 시 13.2%임(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지방세 포함 시 16.5%)

세제혜택(세액공제액)은 2014년 131억 원, 2015년 848억 원이었으며, 이를 1인당 연평균 세제혜택으로 환산하면 2014년 25만 원, 2015년 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고, 또한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인 2013년에도 향후 세제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는 그 납부를 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액공제 전환 후 세액공제 대상액을 연간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2015년에는 가입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IRP 가입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급시점에서의 퇴직연금 과세수준

수급시점에서는 발생한 퇴직연금소득에 과세된다. 앞에서 가입시점에서 세제혜택 수준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시점의 과세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귀속년도 2013~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사용자 부담분에 의해 발생한 소득인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 살펴본다.

〈표 II-10〉에 의하면 2015년 퇴직자는 245만 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 총액은 39조 3,600억 원으로 이를 1인당 퇴직급여액으로 환산하면 1,604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퇴직소득공제는 19조 7,950억 원으로 이를 1인 연간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807만 원이며, 동 금액은 수급단계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즉, 비과세되는 소득수준은 퇴직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퇴직소득공제수준으로 50.3%가 해당되므로 49.7%만 실제로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소득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대상소득인 과세표준소득을 살펴보면, 19조 5,650억 원이며, 이를 1인 연간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7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신고대상세액(결정세액)이 산출되는데, 신고대상세액은 1조 7,340억 원으로 1인 연간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71만 원이 된다. '실효퇴직급여세율'을 과세표준액에서 신고대상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면, 2015년 실효퇴직급여세율은 8.9%(1,734 / 19,565 × 100%)로 추정된다. 이를 자신이

수급한 퇴직급여총액의 비율로 표현하면 4.4%(1,734 / 39,360 × 100%)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실적으로는 후자인 4.4%가 퇴직근로자의 '체감적 실효퇴직급여세율'이라고 하겠다.

퇴직급여가 노후준비자산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시금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노후준비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소득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까지는 퇴직소득이 이연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이연퇴직소득세³²⁾는 2015년 기준으로 6,560억 원이며, 1인 연간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7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 이후 연금수급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이다. 이러한 이연퇴직소득이 연금수급을 결정할 주요한 소득원천이 되며, 2015년 기준으로 연금화 가능성이 있는 퇴직소득은 전체 퇴직소득의 37.8%³³⁾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연퇴직소득세 발생시점인 55세 이후에도 일시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연금화 소득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본인의 선택에 의해 퇴직 이후 연금수급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데 퇴직시점에서 이를 산출해 두는 값임

33) 세금이 소득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 대비 이연퇴직소득세'는 '전체 퇴직소득 대비 연금소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세액 중 이연퇴직소득세 이 차지하는 비율인 37.8%(27만 원 / 71만 원 × 100)는 전체 퇴직소득에서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퇴직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II-10〉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단위: 천 명, 십억 원)

연도	퇴직자 인원	퇴직급여 총액	퇴직소득 공제	과세표준	신고 대상세액 (결정세액)	이연 퇴직소득세
2013년	2,053	21,069	10,976 (535)	10,092	1,116 (54)	743 (36)
2014년	2,172	28,104	14,586 (672)	13,517	968 (45)	426 (20)
2015년	2,454	39,360 (1,604)	19,795 (807)	19,565 (7,972)	1,734 (71)	656 (27)

주: () 안은 1인당 수준임(단위: 만 원)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4-4-2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II (퇴직급여액, 과세표준)' 참조

한편, 퇴직급여 중 연금수급요건을 갖춘 퇴직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16년 상반기 중 연금 수급요건(55세 이상)을 갖춘 퇴직급여수급 개시 계좌(15만 173좌) 중 연금수급을 선택한 비율³⁴⁾은 1.6%(2,389좌)에 불과하고, 수급액 기준으로도 전체 3조 7,108억 원 중에서 17.2%(6,389억 원)가 연금으로 수급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 현황(2016년 상반기 기준)

(단위: 좌, 억 원, %)

일시금수급		연금수급		합계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147,784 (98.4)	30,719 (82.8)	2,389 (1.6)	6,389 (17.2)	150,173 (100.0)	37,108 (100.0)

주: 일시금수급·연금수급 개시시점의 적립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

34) 정부는 '16년부터 연금수급비율 산출 시 퇴직급여수급 개시 계좌 기준으로 변경함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이나 수급형태 평가를 통해 현행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가.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 약화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사적연금³⁵⁾ 보험료에 대한 세제 지원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수준(15.7%)은 OECD 평균(21.5%)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연간 78,500달러(9천만 원), 미국은 연간 16,500달러(1천 9백만 원)의 납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퇴직연금 본인 부담액의 합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교할 때 우리나라보다 2.7~12.9배 수준³⁶⁾이며, 또한 동 기준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액공제 적용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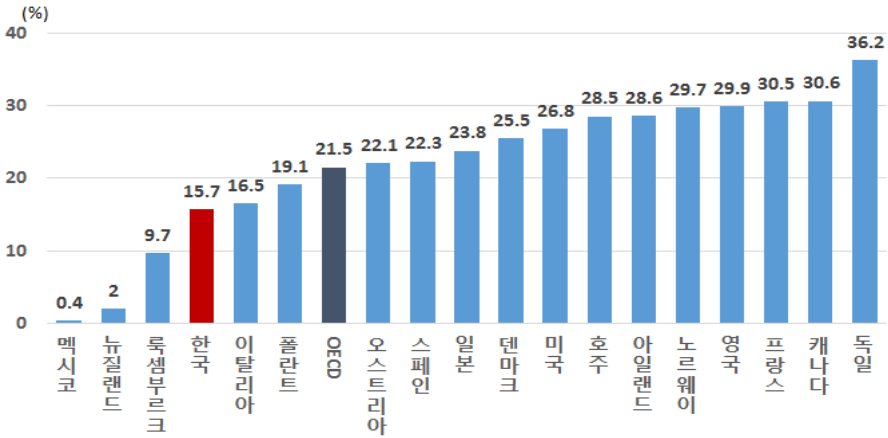
〈그림 II-3〉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모두를 고려한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은 퇴직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II-3〉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⁷⁾

35)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적연금으로 설명하고자 함

36) 물론 국가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16년 1인당 GDP 기준으로 OECD 평균은 37,276달러로 우리나라 27,533달러에 비해 1.4배 수준임.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연금세제혜택이 2.7~12.9배인 것은 경제상황에 비해 연금세제지원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7)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특히 호주, 미국, 영국 등)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II-3〉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주: 1)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2) 기여금액 대비 비율

자료: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류건식(2013)

〈그림 II-3〉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아진 원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표 II-12〉 참조).

물론 국가마다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강제 및 준강제 퇴직연금 기준으로 볼 때 호주,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등은 생애가능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률 13.9%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의가입 형태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12〉 사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률

(단위: %)

국가	강제 및 준강제 퇴직연금	임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계
호주	68.5	n.a.	19.9	19.9
캐나다	n.a.	25.7	24.7	-
칠레	78.9	-	-	-
독일	n.a.	56.4	35.2	71.3
일본	-	-	-	-
한국	13.9	n.a.	23.4	23.4
멕시코	57.8	1.7	n.a.	1.7
네덜란드	88.0	n.a.	28.3	28.3
뉴질랜드	n.a.	7.2	72.9	-
스웨덴	QMO:~90	n.a.	36.0	36.0
영국	n.a.	30.0	11.1	43.3
미국	n.a.	41.6	22.0	47.1

주: 1) 독일, 스웨덴을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비율임

2) 독일은 사회보험기여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입률이며,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 대한 가입률임

3) 스웨덴 QMO는 준강제퇴직연금을 의미함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2015"

나.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별 세제 차별화 취약

우리나라는 2014년 세제지원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까지 가입이 감소함에 따라³⁸⁾ 사적연금 세제지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가입시점에서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수준'³⁹⁾에서 보듯이 2013년에서 2014년까지 퇴직연금 납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세제지원 방식 변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과정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시 16.5%)⁴⁰⁾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38) 저소득층 가입 감소 관련 내용은 '〈표 IV-1〉 퇴직연금 세제혜택 방식변화 효과(2013년 vs 2014년 귀속분)'을 참조 바람

39) 제2장 제1절 '다. 퇴직연금 세제 수준'을 참고 바람

40) 5,5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12%를 적용함(지방세 포함 시 13.2%)

하여 당시 저소득층의 적용 한계세율 6%보다 세제혜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다는 점 외에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도 한 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변경에 대한 이해가 낮았을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연금세제 개편 후인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4.0%) 불구하고 연금저축은 감소(-2.2%)하였으며, 특히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동 기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은 60.4%나 크게 감소하였다.⁴¹⁾ 또한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연간 불입금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의 세금 감면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72.7%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90.6%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⁴²⁾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납부중지(혹은 해약)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⁴³⁾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금세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 및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등 가입 확대가 추진될 경우 소득계층 및 직종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가 적용될 경우 적용 일정에 따라 소득계층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즉,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방향 중 하나인 사업장 도입 의무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가

41) 강성호(201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보험연구원

42) 보험소비자조사(2016)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균소득 이상인 자(예: 5,500만 원 이상)는 세제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도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된 것으로 보임

43) 퇴직연금 본인 부담분에 대한 세제효과 분석은 제4장의 1절을 참고하기 바람

입이 더디게 진행되어 세제지원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⁴⁴⁾

〈표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도입률⁴⁵⁾과 가입률⁴⁶⁾을 살펴보면, 각각 17.0%, 53.5%(2016년 6월 말)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도입률과 가입률이 모두 낮았다.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의무가입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입은 늦어져 소득계층 간 연금소득의 격차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표 II-1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및 가입률

(단위: %)

사업장 규모	사업장 ¹⁾			상용근로자 ²⁾		
	사업장 수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도입률	상용 근로자 수	퇴직연금 가입자 수	가입률
10인 미만	1,587	192	(12.1)	3,224	1,918	(33.7)
10~30인 미만	202	84	(41.5)	2,465		
30~100인 미만	60	31	(51.0)	2,273	2,680	(69.8)
100~300인 미만	12.1	8.3	(68.8)	1,566		
300인 이상	2.9	2.6	(89.7)	2,040	1,591	(78.0)
전체	1,864	317 (1,547)*	(17.0)	11,568	6,189 (5,379)*	(53.5)

주: 1) '금융감독원, 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장 수는 2014년 기준(고용노동부자료 참조)이며,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2016년 6월 기준임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의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종사자 지위별)'자료와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3) ()*는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사업장과 상용근로자 수로서 퇴직연금 확대대상을 의미함

자료: 강성호(2017),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 II-14〉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의 퇴직연금 가입은 고소득층에 비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

44) 강성호·최장훈,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고령화리뷰』, Monthly 제8호, 보험연구원

45)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비율임

46)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비율임

소득층 근로자는 62.3%, 중산층 근로자는 38.1%, 고소득층 근로자는 11.7%여서, 저소득층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조치 없이 가입 확대 환경만 변화할 경우 연금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표 II-14〉 소득계층별·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비중

(단위: %)

사업장규모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10인 미만	62.3%	38.1%	11.7%	32.7%
10~30인 미만	18.3%	21.6%	11.8%	18.6%
30~100인 미만	9.9%	17.6%	20.2%	17.7%
100~300인 미만	4.1%	10.4%	12.5%	10.4%
300인 이상	5.3%	12.3%	43.8%	2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저소득층은 중위근로소득(Median)의 50% 이하, 중산층은 중위근로소득의 50~150% 이하, 고소득층은 중위근로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소득계층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8차 자료를 활용; 강성호(2017) 재인용

다음으로,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자영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용 확대) 과정에서 업종별 세제지원상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자, 공무원 등 소득활동자는 모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런데, 공적연금소득 수준이 높은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추가적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보험료 부담

〈표 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영세하므로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게 되는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즉, 퇴직금제

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사외적립되어 사업상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만큼 사업운영 경비를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기업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퇴직금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의 해당 퇴직금은 사업장의 운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주는 그만큼 운영경비 마련이 수월하다고 하겠다. 특히, 사업운영 경비를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할 경우 대기업 사업주에 비해 영세사업주의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영세사업주로 하여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낮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생멸 현황⁴⁷⁾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시 사업장 규모와 기업재무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기준 종사자 규모별 활동 기업과 소멸기업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II-15>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14년도 활동기업 5,559개소 중에서 소멸기업은 14.0%로 이중 소규모 기업의 소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 대상⁴⁸⁾이 되는 2인 이상 기업 중 2~4인과 5~9인 소규모 사업장의 소멸률은 각각 5.6%, 3.7%로 높게 나타났다.

47)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3),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를 참조함

48) 1인 사업장은 피용자가 없는 순수자영자이므로 퇴직급여 대상자가 없음

〈표 II-15〉 종사자 규모별 활동/소멸 기업 수 현황(2014년)

(단위: 천 개소, %, %p)

구분	활동기업 수		소멸기업 수		
		구성비		소멸 비중	구성비
전체	5,559	100.0	777	14.0	100.0
1인	4,543	81.7	731	16.1	94.2
2인 이상	1,016	18.3	45	4.5	5.8
2~4인	545	9.8	31	5.6	3.9
5~9인	256	4.6	9	3.7	1.2
10~49인	181	3.3	5	2.7	0.6
50~99인	19	0.3	0	1.9	0.0
100인 이상	15	0.3	0	1.1	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3),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이를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표 II-16〉과 같이 2~4인과 5~9인 사업장 각각 8만 1천 명, 5만 9천 명으로 총 14만 명 정도가 기업 소멸에 따른 근로이력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기업)의 소멸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조치가 영세사업주 부담을 초래하여 이들 사업장의 소멸을 부추길 우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업장 도입 의무화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직장을 잃어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II-16〉 종사자 규모별 활동/소멸 기업의 종사자 수 현황(2014년)
(단위: 천 명, %, %p)

구분	활동 종사자 수		소멸 종사자 수		
		구성비		소멸 비중	구성비
전체	18,433	100.0	1,009	5.5	100.0
1인	4,543	24.6	731	16.1	72.4
2인 이상	13,889	75.3	278	2.0	27.6
2~4인	1,497	8.1	81	5.4	8.0
5~9인	1,653	9.0	59	3.6	5.8
10~49인	3,435	18.6	87	2.5	8.6
50~99인	1,283	7.0	23	1.8	2.3
100인 이상	6,021	32.7	28	0.5	2.8
300인 이상	4,235	23.0	5	0.1	0.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3),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라. 연금수급 유인 관련 세제 미흡: 수급 시 소득공제 문제

퇴직급여는 수급 시 일정금액이 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⁴⁹⁾)되어 과세대상 퇴직소득이 산출되면 여기에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결정된다. 그런데, 퇴직소득공제가 상당히 낮아 퇴직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급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지만, 전체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시금과 연금수령에 따른 과세차이는 크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5년으로 2억 원의 퇴직급여가 발생할 경우 현행 퇴직소득세 방식에 의하면 약 79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⁵⁰⁾ 적립금 대비 퇴직소득세(일시금 수급 시)의 비율은 약 4% 수준이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급하게 되면 감액 비율 30%가 적용된 연금소득세는 234만 원이 되는데, 이는 적립금 대비 퇴직소득세(일시금 수급 시)의 비율로 1.2%이다.

49)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의 2단계로 나타나며, 관련 내용은 〈부록 II〉를 참조하기 바람

50) 2016년부터 변경되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그런데, 아직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는 2억 원 수준의 퇴직적립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1인당 평균 퇴직연금 적립액은 3,277만 원⁵¹⁾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퇴직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적어 연금화로의 유인은 매우 약하다. 현 단계에서는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퇴직적립금액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납부 및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 소결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석단계별로 문제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II-1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입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 약화’,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별 세제 차별화 취약’,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으로는 해외사례, 통계분석,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급단계에서는 ‘연금수급 유인 관련 세제 미흡’으로 문제제기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황분석과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1) ‘<표 IV-7> 퇴직연금 확대단계별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실태조사 활용’ 참조. 여기서 앞의 ‘<표 II-10>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서 1인당 퇴직급여 총액인 1,604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표본자료와 실제자료(전산자료)라는 자료의 성격 때문일 뿐만 아니라, 생애기간(<표 IV-7>)과 근속기간(<표 II-10>)을 고려하여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 II-17〉 문제점별 대응방법

구분	문제점	대응방법(내용설명 포함)
가입 단계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 약화	- 해외사례(3장 2절) - 통계분석(4장 1절)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별 세제 차별화 취약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과정(큰 사업장 우선 적용)에서 소득계층간 연금소득 격차 우려 · 개인형퇴직연금(IRP) 적용 확대(자영업자, 공무원 등) 과정에서 세제지원상 형평성 논란	- 해외사례(3장 2절) - 통계분석(4장 2절)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과정에서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	- 현황분석(2장 2절) - 통계분석(4장 2절)
수급 단계	연금수급 유인 관련 세제 미흡	- 현황분석(2장 1절) - 해외사례(3장 2절)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퇴직연금 세제는 개인의 노후소득 재원이 되는 연금적립액과 가입률 등 퇴직연금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 즉, 보험료 납입, 적립금 운영, 급여지급 단계에서의 과세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⁵²⁾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금 등 퇴직저축(Retirement savings)에 대해서는 타 저축수단에 비해 세제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퇴직저축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이유로는 퇴직저축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들이 스스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감소를 통해 조세재정 비용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³⁾

본 장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퇴직연금 과세체계, 세제혜택 운영 방식, 국가별 세제혜택 수준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살펴본 후,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세정책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52) Genser and Holzman(2016) 등은 연금세제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Comprehensive income tax, Expenditure tax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53) 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함

1.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가. 과세체계 유형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납입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Tax), 비과세(Exempt)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과세방식은 이론적으로 TTT, TTE, TET, TEE, ETT, ETE, EET, EEE 등 모두 8가지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ET” 방식의 과세체계는 납입단계에서 보험료 납입액(contributions)에 소득공제를 해주고(Exempt),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Exempt), 수급단계에서는 축적된 연금 적립금(Pension benefits)에 대해 과세(Taxed)하는 방식이다. “EET” 방식은 퇴직소득세 납부시점을 수급시점으로 연기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적립금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EET 방식의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⁵⁴⁾

〈표 III-1〉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체계

구분	OECD 국가	비 OECD
EET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
TEE	체코, 헝가리, 멕시코	리투아니아
ETE	-	사이프러스
TET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말타
ETT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
TTE	호주, 뉴질랜드, 터키	-
EEE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3

54) 김병덕(2011); 윤성주(2013)

나. 세제혜택 방식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으로는 소득공제(Tax Deduction), 세액공제(Tax Credit),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s),⁵⁵⁾ 보조금 지급(Subsidies)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Tax break)이 사적연금에 제공되는 재무적 지원(Financial incentives)의 주된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액의 보조금이나 매칭기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⁵⁶⁾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해주는 형태로, 대다수 국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고, 납부한 세금에서 세액공제액 만큼 감액해 주는 방식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말타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비율은 13.2%(한국)~35%(이스라엘)의 수준이다.⁵⁷⁾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도 납입한 보험료의 전체 또는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납입한 보험료 전체를 소득공제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⁵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포르투갈의 경우는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만 소득공제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납입한 전체보험료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체코의 경우는 납입보험료 중 연간 CZK 12,000⁵⁹⁾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5)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는 “대응출연”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56) OECD(2016), OECD Pensions Outlook 2016

57) OECD(2015a),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58) 캐나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며,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세율(Marginal rate of income tax)을 적용함. 이 외의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거나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OECD(2015a))

59) 2017년 9월 기준 12,000 코루나(CZK)는 한화 60만 원 수준임

〈표 Ⅲ-2〉 주요국의 매칭기여제도 운영 현황

국가	제도명	지원내용
호주	퇴직연금	* Super Co-Contribution: 저소득층 대상 - 2012~2013년: 50%, 2014년~: 1달러당 50센트
오스트리아	퇴직연금	* 매칭비율 = 2.75% + α (금리수준 연동)
칠레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의 15% 지원(6UTM 한도)
체코	보충형 연금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 - (예) 납입액이 CZK 300~399: CZK 90 지원 납입액이 CZK 900~999: CZK 210 지원 납입액이 CZK 1,000 이상: CZK 230 지원
뉴질랜드	KiwiSaver	* 연간 NZD 521.43 한도로 1달러당 50센트 대응출연

주: 1)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칠레의 가상 화폐단위로, 2016년 말 기준으로 1 UTM = 46,183 peso (US \$68.57)

자료: OECD(2015),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Mexico", p. 97

매칭기여는 정부 또는 고용주⁶⁰⁾가 퇴직연금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응(Matching)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칭기여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조세재원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세제지원으로 볼 수 있다.⁶¹⁾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을 들 수 있다(〈표 Ⅲ-2〉 참조).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⁶²⁾가 고용주가 납부해주는 퇴직연금제도 외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퇴직연금계좌(Super Fund)에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최대 \$500)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조적립(Super Co-contribution)제도⁶³⁾를 시행하고 있다.⁶⁴⁾ 2012년

60) 조세(Tax) 정의(정부기관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것)를 놓고 볼 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매칭기여와 달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는 직접적인 세제혜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주체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험료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세제혜택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본 절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매칭기여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함

61) OECD(2015),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Mexico"

62) 2014~2015년 기준 연소득 \$34,488 이하인 경우임

63)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super-co-contribution/>

64) 회계연도 종료 전, 본인이 가입한 연금회사로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후, 소득신고(Tax-Return)을 하는 경우 호주정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해당금액을 가입자의 연금회사로 추가 납부해 줌

과 2013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매칭비율이 50%였으나, 2014년부터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1달러당 50센트를 정부가 대응출연해 주고 있다. 또한, 칠레의 경우도 200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저축에 대해 6UTM(US\$ 410)을 한도로 납입액의 15%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⁶⁵⁾ 특히, 18~35세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⁶⁶⁾

한편, 일본의 기업형 DC연금은 2012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부담금 납부 한도의 50%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의 401(k)의 경우 사용자의 매칭기여금은 근로자가 401(k) 계좌에 적립하는 부담금의 50% 수준이며, 근로자 보수의 6%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은 독일, 칠레 등에서 운영되는 형태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1년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리스트터연금, 뤼롭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리스트터보조금,⁶⁷⁾ 아이헬보조금(Eichel Subsidy)⁶⁸⁾ 등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부과된 보험료에서 보조금 만큼 차감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멕시코의 경우도 군인저축(Solidarity Savings)에 대해 납입보험료 1 peso당 3.25 peso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5) Solange Berstein J.(2009), "Pension System in Chile: The 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OECD/IOPS Global Forum on Private pensions

66)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s: Country Analysis"

67) 2002년에 도입된 리스트터연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개인 연금으로,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

68) 아이헬 보조금은 적립방식 퇴직연금에만 적용됨

〈표 Ⅲ-3〉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지원 형태

구분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 정률	보조금(Subsidies) 지급: 정액
해당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영국, 미국,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독일, 멕시코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19

1) 과세체계 및 유형별 세제혜택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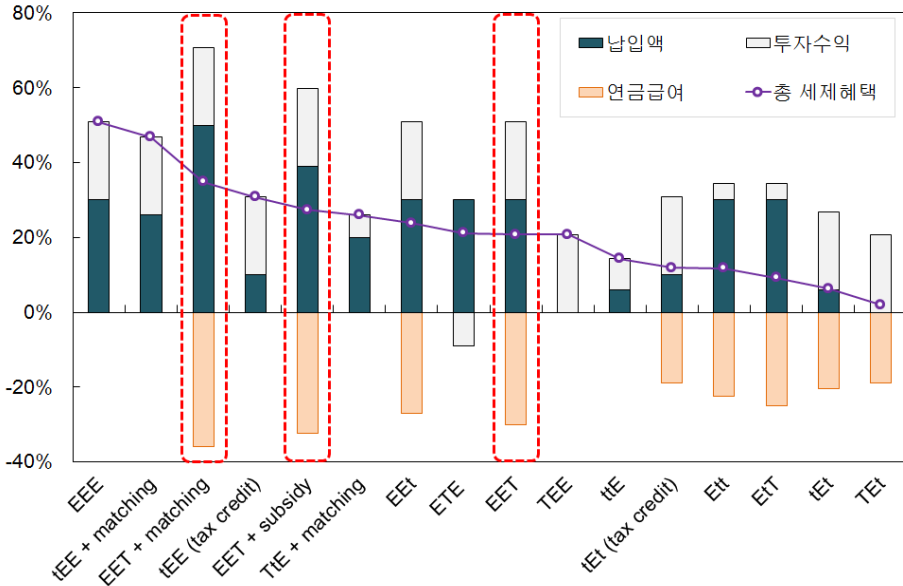
OECD(2016)⁶⁹⁾에서는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16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제상의 혜택수준(Tax advantage)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세제혜택은 개인⁷⁰⁾이 일반 저축상품(Benchmark savings vehicle)⁷¹⁾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액 감소분이다. 즉, 타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연금 가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현재가치 차이를 총 납입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69) OECD(2016), Pensions Outlook 2016

70) 2015년 기준 20세인 평균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65세까지 매년 임금의 10%를 퇴직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퇴직 후 매년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상정함

71) 일반 저축상품의 과세형태는 납입액에 대한 과세,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 연금급여액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는 TTE 방식으로 상정함

〈그림 Ⅲ-1〉 퇴직연금 과세형태별 세제혜택 규모



주: 1)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 적립금 운용, 연금급여 지급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t(tax credit), 비과세는 E(Exemption), 과세는 T(Taxation)로 표시함

2) 운용수익률, 시간할인율은 3%, 물가상승률은 2%,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5%로 가정

3) 보험료 납입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연간 7,300 유로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 하는 경우에 대해 보험료 납입단계에서의 비과세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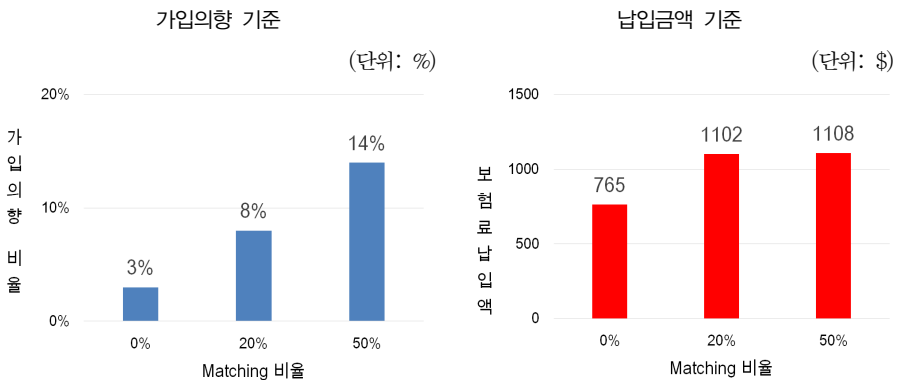
자료: OECD(2016), Pensions Outlook 2016, p. 50

세제혜택 방식별 세제혜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방식에서 일반저축 가입 시 부담하게 되는 세액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입·운용·지급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 TEE, ETE, EET 체계하에서는 세제상의 혜택이 모두 21%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지급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 세액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와 보조금(Subsidy) 방식의 세제효과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세제혜택 효과가 각각 35%, 27%로 나타나 보조금방식보다 매칭기여 방식의 세제혜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매칭기여 방식 도입 효과: 가입률, 가입금액 측면

Duflo et al.(2006),⁷²⁾ Engelhardt & Kumar(2007)⁷³⁾ 등은 매칭기여가 퇴직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Duflo et al.(2006)은 개인이 최대 \$1,000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기업이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의 20% 또는 50%를 추가로 제공하는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제도가 있다고 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Ⅲ-2〉 매칭기여 제공이 개인퇴직계좌(IRA) 개설에 미치는 영향



자료: Duflo et al.(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그 결과 매칭기여가 제공되지 않는 IRA 제도에 대한 가입의향 비율은 3%에 불과하나, 매칭기여가 20%, 50% 제공되는 IRA 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은 각각 8%, 1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매칭기여가 존재하지 않는 제도, 매칭기여가 20%인 제도, 매칭기여가 50%인 제도에 대해 각각 평균적으로 \$765, \$1,102, \$1,108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Duflo, Esther, William Gale, Jeffrey Liebman, Peter Orszag, and Emmanuel Saez.(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73) Engelhardt, Gary V. and Anil Kumar(2007), “Employer Matching and 401(k) Saving: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미국은 401(k)⁷⁴⁾ 제도하에서는 근로자의 기여에 대해 100% 또는 50%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대응출연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Engelhardt & Kumar(2006)은 고용주의 대응출연이 401(k)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주의 매칭기여로 인해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25%인 경우 401(k) 가입률이 3.75%에서 6%로 증가하며, 저축액은 연간 \$400~\$70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다. 국가별 세제혜택 수준 비교

1)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저축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부 또는 일부 소득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금지급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국가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사적연금 지급액은 평균적으로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GDP보다 38%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15)⁷⁶⁾ 발표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급여지출액은 2011년 기준 GDP의 1.6%로, 전체 연금지출⁷⁷⁾의 1/5에 해당한다. 사적연금 지출비

74)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는 401(k), 403(b) 등이 있으며, DC형 개인연금제도로는 사용자 보조 IRA 제도인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소규모 기업 대상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 등이 있음. 401(k) 제도는 이익분배제도, 금전구입제도, 주식상여제도, SIMPLE 등에 결합될 수 있는 선택적인 제도임. 근로자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일정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는 소득공제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부담금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 현금이 아닌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고 함

75) 고용주에 의한 매칭기여는 제도 참가율과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기여의 가입탄력성(0.02-0.07)과 저축탄력성(0.09-0.12)이 높지 않음

76)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77) 2011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급여지출액은 9.3%임

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네덜란드는 GDP의 5.8%를 사적연금 급여로 지출하며, 이 국가의 공사연금의 합산 급여액은 GDP의 11.2% 수준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는 사적연금 급여지출이 GDP의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그 밖에 사적연금액 지출이 많은 국가로는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등으로 GDP의 3.3~4.7%를 지출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방식을 사용한다.⁷⁸⁾ 동 방식은 정부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직접지출)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의 형태로 산출한다. 퇴직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21개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GDP의 0.2% 미만이었으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만이 GDP의 1% 이상의 세금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8) 세금지출에 대한 국제 비교 시, 국가별로 선택된 기준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일률적인 비교는 쉽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Ⅲ-4〉 사적연금에 대한 급여액 지출과 세제혜택 수준

(단위: %)

국가	제도 유형	사적연금 제도의 급여지출						증감률	공사연금 급여지출 (GDP 대비)	사적연금 세제혜택 (GDP 대비)
		GDP 대비 지출 비율					'90~'11			
		'90	'95	'00	'05	'11		2011	2011	
호주	m		0.7	0.9	0.4	0.4		6.0	1.9	
	v		1.8	2.9	1.9	2.1				
오스트리아	v	0.4	0.4	0.5	0.5	0.7	56.6	13.9	0.0	
벨기에	v	1.0	1.7	1.4	1.5	1.2	15.7	11.4	0.2	
캐나다	v	2.5	3.4	3.9	4.2	3.3	29.3	7.6	1.5	
칠레	m		0.9	1.1	1.2	1.4		4.6	N.A.	
덴마크	q/m	1.5	1.8	2.0	2.3	4.7	202.2	10.9	N.A.	
핀란드	v	0.1	0.4	0.3	0.2	0.3	173.6	10.5	0.1	
프랑스	m	0.2	0.1	0.2	0.2	0.2	-18.7	14.1	0.0	
	v	0.1	0.1	0.1	0.1	0.2	233.0			
독일	v	0.7	0.7	0.8	0.8	0.8	18.1	11.4	0.9	
그리스	v	0.4	0.4	0.5	0.5	0.4	0.5	14.9	N.A.	
아이슬란드	v	1.4	1.8	2.3	2.8	3.7	167.1	5.9	0.0	
아일랜드	v	0.9	1.0	0.8	0.9	0.8	-4.3	6.1	1.1	
이탈리아	m	1.0	1.3	0.9	1.0	1.1	6.3	17.3	0.0	
	v	0.1	0.3	0.3	0.3	0.4	159.0			
일본	m	0.2	0.3	0.5	0.4	0.6		13.0	0.0	
	v	a	a	2.9	2.2	2.7				
한국	m	0.2	0.2	0.6	0.4	0.9	400.3	3.2	N.A.	
	v	m	0.0	0.0	0.0	0.1				
룩셈부르크	v	a	a	a	0.6	0.6		8.3	0.0	
멕시코								1.8	0.3	
네덜란드	m	0.0	0.0	0.0	0.0	0.0		11.2	N.A.	
	q/m	3.9	4.7	4.8	5.2	5.8				48.5
뉴질랜드								4.9		
노르웨이	v	0.6	0.6	0.6	0.6	0.6	15.9	6.1	0.5	
포르투갈	v	0.3	0.3	0.4	0.6	0.6	95.0	13.6	0.1	
슬로바키아	v	a	0.1	0.2	0.4	0.3		7.3	0.1	
스페인								10.5	0.2	
스웨덴	q/m	1.2	1.9	1.8	2.1	2.6	112.5	9.9	N.A.	
스위스	m	2.3	3.3	4.2	4.7	5.0	113.3	11.5	N.A.	
	v	0.0	0.0	0.0	0.0	0.0				
영국	v/m	4.4	5.3	6.5	5.2	5.3	20.6	10.9	1.5	
미국	v	2.6	3.0	3.6	3.6	4.5	72.5	11.2	0.8	
OECD		1.0	1.2	1.4	1.4	1.6	54.2	9.4	1.4	

주: 1) m: 의무제도, v: 임의가입, q/m: 준의무제도

자료: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2)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효과

평균소득자의 퇴직연금 과세효과를 일반저축과 비교해 볼 때 모든 OECD 국가에서 퇴직연금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제혜택효과는 17%이며, 확정기여형은 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세부적인 비교는 <표 Ⅲ-5>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Ⅲ-5>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운영단계별 세제혜택

국가	제도유형	과세체계	세제혜택			
			납입	운용	인출	합계
호주	적격 퇴직연금	ttE	22%	15%	0%	37%
칠레	퇴직연금 (의무)	EET + 매칭	5%	7%	-1%	11%
독일	Pension funds	EET	26%	14%	-20%	20%
	Riester 연금	EET + 보조금	14%	14%	-9%	19%
일본	기업형 DB 제도	EEt	31%	15%	-21%	24%
	기업형 DC 제도	EEt	31%	15%	-19%	26%
	개인형 DC 제도	EEt	31%	16%	-16%	31%
한국	DB형 퇴직연금	EEt	18%	17%	-17%	17%
	DC형 퇴직연금	tEt (세액공제)	16%	17%	-18%	14%
멕시코	퇴직연금 (의무)	ttt + 매칭 + 보조금	33%	18%	0%	51%
	퇴직연금	EEt	22%	18%	0%	40%
네덜란드	DB형 퇴직연금	EET	48%	26%	-42%	32%
	DC형 퇴직연금	EET	49%	24%	-41%	32%
뉴질랜드	퇴직연금	ttE	1%	2%	0%	3%
	KiwiSaver	ttE + 매칭	12%	-1%	0%	11%
스웨덴	퇴직연금 (준의무)	EtT	44%	4%	-35%	13%
스위스	퇴직연금 (의무)	EET	31%	18%	-18%	31%
영국	DB형 퇴직연금	EET	31%	26%	-28%	30%
	DC형 퇴직연금	EET	31%	26%	-23%	34%
	자동가입형	EET + 매칭	46%	25%	-23%	48%
미국	401(k) 제도	EET + 세액공제	25%	21%	-22%	24%
	IRA	EET + 세액공제	25%	22%	-21%	26%
	Roth IRA	TEE + 세액공제	0%	22%	0%	22%

자료: OECD(2016), Pensions Outlook

2.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주요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주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1)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 (2) 계층 간 소득불균형 심화, (3)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 (4) 적립비율 규제 등 수급권 보호 강화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에서는 사적연금 가입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 노후소득 소득원 확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연금세제 정책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Ⅲ-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세제정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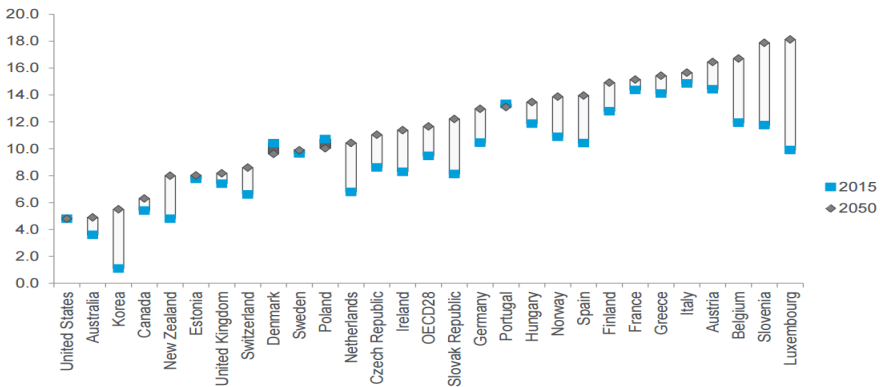
구분	환경변화	주요국 대응 사례	정책효과
근로자	공적연금 재정부담 가중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가입의무, 자동가입제도) : 세제지원 확대	정부재정지출 감소, 가입률 증대
	소득불균형 심화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 차등적 세제지원	취약계층 가입 증가, 소득불균형 개선
	기대수명 증가, 투자환경 악화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한 연금수급 유도 : 급여지급형태별 세제차등	연금수급자 증가
고용주	수급권 보호 강화 (적립금 규제), 도입 의무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절감 : 퇴직급여손비처리, 보험료 보조, 초기운영비용 지원	제도도입기업 증가

가.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OECD(2015)의 전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15년 전체 인구의 16%에서 2050년에는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⁷⁹⁾ 고령화로 인한 근로인구 감소는 공적연금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OECD 평균 연금지출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9% 수준에서 2050년에 1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⁸⁰⁾

〈그림 Ⅲ-4〉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지출 현황 및 전망

(단위: %)



주: 2015년과 2050년의 각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을 의미함

자료: Insurance Europe(2016), A Blueprint for Pensions; Citi(2016), Coming Pension Crisis 2016

이에 각국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퇴직연령 연장,⁸¹⁾ 수급연령⁸²⁾의 상향, 연금수급액 축소⁸³⁾ 등과 같은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79) 한편,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5%에서 2050년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OECD(2015))

80) OECD 개별국의 공적연금 지출 전망은 〈부록 Ⅲ〉을 참조하기 바람

81) 독일,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임

82) 아일랜드는 연금개시연령을 2014년 65세에서 66세로 연장하였고, 2028년 이후 68세로 연장할 계획임

83) 호주는 기초연금제도(Age pension)의 자산평가를 통해 상한선에 대해 연금지급액을 차감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스페인은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생애기대소득에 따라 연금수

러한 재정건전성 강화는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사적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도입 의무화, 자동가입,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정책 수단으로 세제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1) 세제지원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를 축소하였으며⁸⁴⁾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⁸⁵⁾ 이 과정에서 독일정부는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en), 연금금고(Pensionskassen), 연금기금(Pensionsfonds) 등의 퇴직연금에 대해 아이헬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상기 유형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납입한 보험료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고, 급여희생방식(Salary sacrifice)⁸⁶⁾의 경우에는 보험료만큼 과세기준 임금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⁸⁷⁾

당을 조정함. 스페인, 캐나다 등은 자동조정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물가연동제와 연금시스템 재정상태와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음(OECD(2015a))

84) 독일 퇴직연금제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직접약속과 지원금고는 사내적립 방식이며, 나머지는 외부의 전문퇴직연금기관을 통해 사외 적립하는 방식임

85) Hain et al.(2004); Deutsche Bank(2005) 등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8.3%에서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 36.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86) 독일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용 충당방식은 고용주가 임금을 추가하여 퇴직연금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퇴직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급여희생(Salary sacrifice) 방식이 있음

87) 급여희생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험의 기준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Berner(2006))

〈표 Ⅲ-6〉 독일의 퇴직연금(Betriebliche Altersvorsorge) 유형별 특징

구분	가입자 (천만 명)	특징	적립 방식	과세체계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5,117	이율보증	사외 적립	• 납입: 소득공제
연금금고(Pensionskasse)	4,766	이율보증		• 납입: 소득공제
연금기금(Pensionsfonds)	435	이율보증		• 납입: 소득공제
직접약속(Direktzusage)	4,710	원금보장	사내 적립	• 납입: 전액 비과세
지원금고(Unterstützungskasse)		원금보장		• 납입: 전액 비과세

주: 1) 직접보험, 연금보험, 연금기금의 경우 사회보장세의 최대한도액(€72,600)의 4%와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금액(€1,8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2) 가입자 수는 2015년 말 기준임

자료: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2016), Arbeitgeber-und Trägerbefragung zur Verbreit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Von Alexander Fink(2014), Förderung der freiwilligen Altersvorsorge in Deutschland: Staatliche Bevormundung und schwache Anreize, IREF Policy Paper Series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정부재정에 어려움을 겪자 1978년에 기초연금제도 외에 공적연금의 기여와 급여수준을 높인 소득비례연금(SERP: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을 도입하였다.⁸⁸⁾ 이 과정에서 SERP에 대해 적용되었던 적용제외⁸⁹⁾제도를 퇴직연금 및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연금까지 확대하여 공적연금 운용에 따른 재정부담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2년과 1993년에 연금 개혁(Amato)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적연금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⁹⁰⁾ 1995년 연금개혁(Dini)에서는 전통적인 DB 방식 공적연금을 NDC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크게 축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88) 한국재정학회(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효과 분석」

89) 적용제외(Contracting-Out)란 정부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 시 공적연금(SERP)에 대한 가입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임

90) Jessoula M.(2011), "Italy: From Bismarckian Pensions to Multipillarization under Adverse Conditions",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세제혜택 요건 강화: 소득, 연령, 은퇴시점, 납입기간, 인출방식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⁹¹⁾

〈표 Ⅲ-7〉 주요국의 세제혜택 요건

세제혜택 요건	대표 사례
소득상한선	• 오스트리아: 연 €60,000, 미국(IRA): 연 \$71,000
연령제한	• 벨기에: 65세, 영국: 75세
최소 납입기간	• 벨기에: 10년, 에스토니아: 5년, 룩셈부르크: 10년
해당연령까지 근로활동 지속	• 벨기에: 60세(퇴직연금), 핀란드: 68세, 독일: 60세(리스트어연금) • 룩셈부르크: 60세, 스웨덴: 55세(퇴직연금)
급여인출방식 제한	• 핀란드(개인연금): 최소인출 기간 10년 이상 설정 • 룩셈부르크: 일시금 인출 가능 금액 50%로 제한 • 포르투갈: 적립액의 2/3 이상 연금 수급 • 스웨덴: 연금인출 최소 5년 이상

자료: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를 참고하여 작성

또한,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미국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간 €60,000, 미국 IRA 제도의 경우 연간 \$71,0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두고 있다. 연령요건을 설정한 경우도 있는데, 벨기에는 65세, 영국은 75세가 연금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다. 그 밖에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최소납입기간, 특정연령 전 은퇴제한, 특정방식으로의 급여인출 등을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91) 다만, 영국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OECD(2015))

참고 ▶ 자동가입제도와 세제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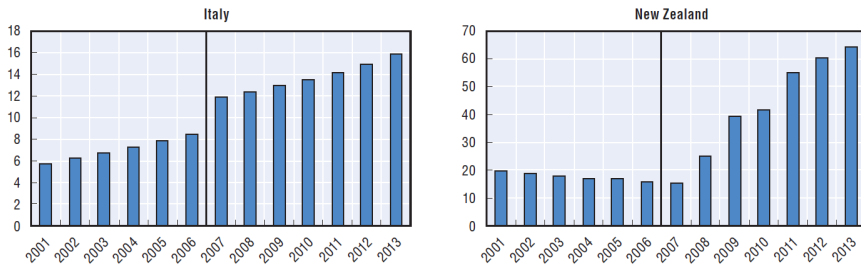
■ 도입배경

〈 주요국의 자동가입제도와 재정 유인책 〉

도입시점	주 대상층	탈퇴	기여율	재정지원	기여
칠레 (2012~2015)	자영자	매년가능	소득의 10%	없음	비허용
이탈리아 (2007)	민간부문 전 근로자	6개월 이내	고용주: 6.91%	타 연금과 동일	비허용
뉴질랜드 (2007)	신규근로자	2 ~ 8주 이내	근로자: 3% 고용주: 3%	세액공제 NZD 521.43	3개월~5년 (가입 12개월 후)
영국 (2012)	연간소득 £10,000 이상	상시적	최소기여율 8%	소득공제	가능
미국 (1998)	22년 이상 근무한자	90일 이내	최소기여율 3%	세제지원	비허용

주: Paklina(2014), Role of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in Automatic Enrolment, IOPS Working Papers on Effective Pensions Supervision, No. 22

■ 자동가입제도 도입 전·후 가입률 변화 (이탈리아, 뉴질랜드 사례)



자료: OECD(2014), Pensions Outlook 2014

2) 세제혜택 지원 효과: 재정지출 감소, 가입률 제고

(1) 노후대비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Pablo Antolin et al.(2004)⁹²⁾은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연금제도의 재정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재정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세제혜택으로 인한 재정비용이 크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면 향후 재정비용은 축소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 급여 축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금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세제지원으로 인한 가입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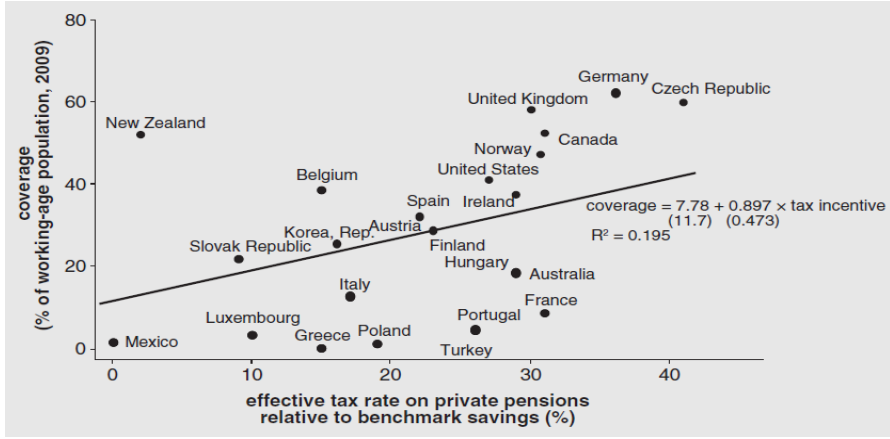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금가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소 미약하기는 하나 세제혜택 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⁹³⁾ Whitehouse(2006)는 두 변수 간 회귀분석의 결과 설명력이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세제혜택이 국가 간 사적연금 가입률을 설명하는 일부 요인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조세체계, 사회보장제도, 문화 등 국가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함에 따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세제혜택 수준과 연금가입률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92) Pablo Antolin, Alain De Serres, and Christine De la Mazonneuve(2004),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ured Retirement Saving Plans", OECD

93) Whitehouse(2006), "Comparing Retirement Saving across Countries: an economic perspective"

〈그림 Ⅲ-5〉 OECD 국가의 세제혜택 수준과 사적연금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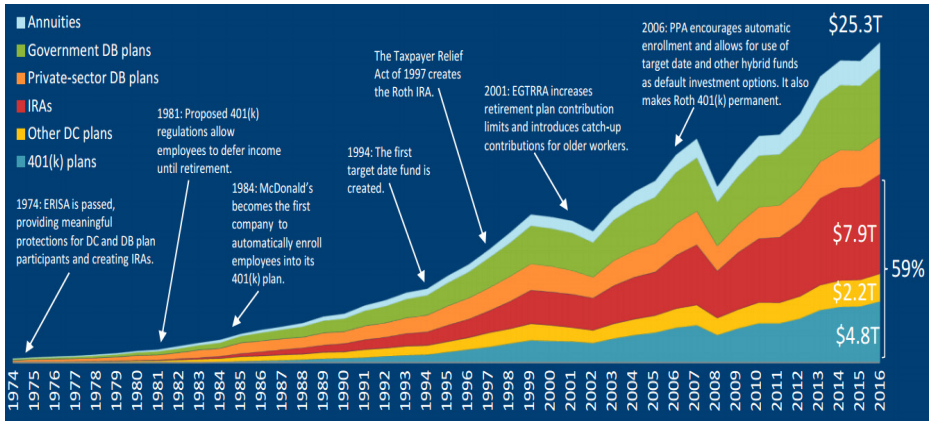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Yoo, K.Y. et A. De Serres(2004),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재인용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특정 국가 내에서의 세제혜택변화로 인한 가입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세제혜택 부여로 가입률이나 시장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⁹⁴⁾

예를 들어, 미국의 퇴직연금이 발달한 주된 이유는 1940년대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즉, 근로자보다 기업에 보다 강한 연금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비각출퇴직연금을 도입함으로써 퇴직연금이 확산되었다. 이후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정비되었으며,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 및 노후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세제혜택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세제혜택 납입 한도액의 확대 과정을 통해 퇴직연금시장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Ⅲ-6〉 참조).

94) 김원식·방하남(2005),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그림 Ⅲ-6〉 미국 퇴직연금 관련 제도변화와 퇴직연금시장 규모 추이



자료: Holden(2017), "The US Retirement System,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한편, 독일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개혁 이전인 2001년 12월 퇴직연금 가입률은 38%였으나 연금개혁 조치 시행 이후인 2003년 3월에는 가입률이 4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아이헬보조금 도입이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 퇴직연금의 보험료 납입주체별 비중 변화를 보면(〈표 Ⅲ-9〉 참조), 2001년 연금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용자부담방식에 비해 아이헬보조금에서 사회보험료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혼합기여방식(근로자 + 사용자)과 근로자부담방식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8〉 독일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주체에 따른 비중

보험료 부담 주체	2001년 12월	2004년 6월
근로자	26	29
사용자	54	38
근로자 + 사용자	27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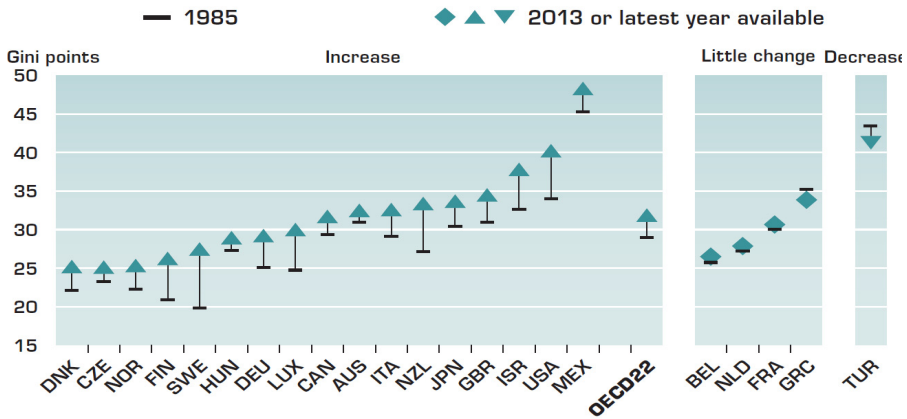
주: 한 기업이 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전체 비중은 100을 초과

자료: 김원섭 외(2006),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p. 97

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최근 3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약 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⁵⁾

〈그림 III-7〉 OECD 국가의 소득불균형 변화 추이(지니계수)



자료: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1980년대에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이 7:1이었으나 이후 이 격차는 꾸준히 벌어져 2000년대에는 9:1까지 높아졌다.⁹⁶⁾ 전체적인 분배구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OECD 평균은 0.29였으나 2013년까지 0.32까지 증가하였다.⁹⁷⁾

95) 홍석표(2015), 「OECD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96) 유럽 대다수 국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영국은 약 10:1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미국은 13~16:1, 칠레와 멕시코는 27~30:1 수준임
 97) 22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지니계수가 증가했으며, 핀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에서는 5pt. 이상 증가했고 그리스와 터키에서만 소폭 감소함. 한편, 앳킨스 지수(Atkinson Index)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소득 불평등도를 조사한 OECD의 "일자리 질(Job Quality 2016)" 보고서에 의하면, 앳킨스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0.32로, 33개국 중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임

특히, 근로기간 동안의 각 개인의 노후대비 수준은 은퇴 이후의 생활으로 직결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퇴직연금 운영을 통해 각 개인이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 불균형 및 빈곤문제 해소 차원에서 주요국에서는 정부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중산층,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1) 취약계층 중심 세제지원 사례

(1) 중산층 및 저소득층

호주는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적격 퇴직연금제도(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액을 추가로 기여해 주는 보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를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는 비적격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 \$1당 정부가 \$0.5(연간 최대 \$50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⁹⁸⁾ 여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⁹⁹⁾ 첫째, 총소득 금액이 \$51,021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21 이하이면, 최대 \$500까지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51,021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둘째, 보조금 지급이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목표도 있기 때문에 총소득의 10% 이상이 고용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셋째, 회계연도 말 기준 71세 이하인 자로 한정하며, 일시적인 거주자는 제외하고 있다.

98) 국세청은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매년 6월 해당금액을 정산해서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을 취함. 한편, 영국(Automatic Tax Relief)과 뉴질랜드(KiwiSaver) 등에서도 호주의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 세제혜택으로 발생한 해당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99)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표 III-9〉 호주의 소득 수준 및 연금납입액별 정부지원액(2016~2017년)

(단위: 호주 달러)

퇴직연금 납입액	개인별 소득 수준(총소득 기준)					
	~\$36,021	\$39,021	\$42,021	\$45,021	\$48,021	\$51,021 이상
\$1,000	\$500	\$400	\$300	\$200	\$100	-
\$800	\$400	\$400	\$300	\$200	\$100	-
\$500	\$250	\$250	\$250	\$200	\$100	-
\$2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2) 근로형태별: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영국은 퇴직연금시장의 양극화 즉,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¹⁰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최소기여금은 8%(기여금 상한은 3,600파운드)인데, 이 중 사용자가 3%, 근로자가 4%, 정부가 개인계좌로 환급을 통해 1%를 보조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직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시 차등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즉, 기여단계에서 근로자 연간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276,000엔인 반면 자영업자는 816,000엔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 후생연금 등 연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100) NEST 제도는 “Pension Act 2008”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동가입제도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퇴직연금기금임

〈표 Ⅲ-10〉 일본 개인형연금제도 납입 한도액(월 기준)

구분		2001. 10	2004. 10	2010. 1	2014. 10~2016
기업형	타 퇴직연금 보유자	¥18,000	¥23,000	¥25,000	¥27,500(연: ¥33만)
	타 퇴직연금 미보유자	¥36,000	¥46,000	¥51,000	¥55,000(연: ¥66만)
개인형	제1호 가입자	¥68,000	¥68,000	¥68,000	¥68,000(연: ¥81.6만)
	제2호 가입자(근로자)	¥15,000	¥18,000	¥23,000	¥23,000(연: ¥27.6만)

주: 제2호가입자는 기업형연금과 확정급여형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임
 자료: 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3) 연령별 지원 차등화: Catch-up Policy

미국, 호주 등은 베이비부머 등 퇴직연령에 임박한 세대 및 중고령층에 대해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중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법(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2001) 제정에 따라 50대 이상에 대해 추가납입제도를 도입하고, 중장년층의 은퇴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납입제도는 50대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추가기여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기여한도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기여금 외에 50세 이상자에게 특별히 허용되는 추가기여로 구성된다.

한편, 호주는 1992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인계정에 납입하며, 기여한도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다. 사용자가 납입해주는 기여금(Super Guarantee)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미국과 달리 해당 금액에 대해 15%로 저율과세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50세 미만 근로자는 25,000 호주 달러, 50세 이상 근로자는 50,000호주 달러까지 기여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표 Ⅲ-11〉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구분	SEP IRA	SIMPLE IRA	Traditional IRA	Roth IRA
납입한도 (+ 추가납입)	\$53,000 (불가)	\$12,500 (+ \$3,000)	\$5,500 (+ \$1,000)	\$5,500 (+ \$1,000)
보험료 납입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과세
투자수익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급여수급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형태	EET	EET	EET	TEE

주: 1) Catch-up contribution: 50세 이상부터 가능

2) Roth IRA: 가입요건에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제한이 존재(독신자: \$132,000, 부부: \$194,000),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인출시점 59.5세 이상인 경우 인출 시 비과세

3) Traditional IRA: 가입요건에 소득제한은 없으나, 연령제한이 존재(70.5세)

자료: 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네덜란드의 경우 연령과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수급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자가 65세 이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9%로 낮다.

〈표 Ⅲ-12〉 네덜란드의 연금지급단계에 적용되는 소득세

소득구간(€)	65세 미만	65세 이상
0~19,645	37%	19%
19,646~33,363	42%	24%
33,364~55,991	42%	42%
55,992 이상	52%	52%

자료: BETTER FINANCE(2016), "Pension Savings - The Real Return"

참고 ▶ 호주의 연금세제체계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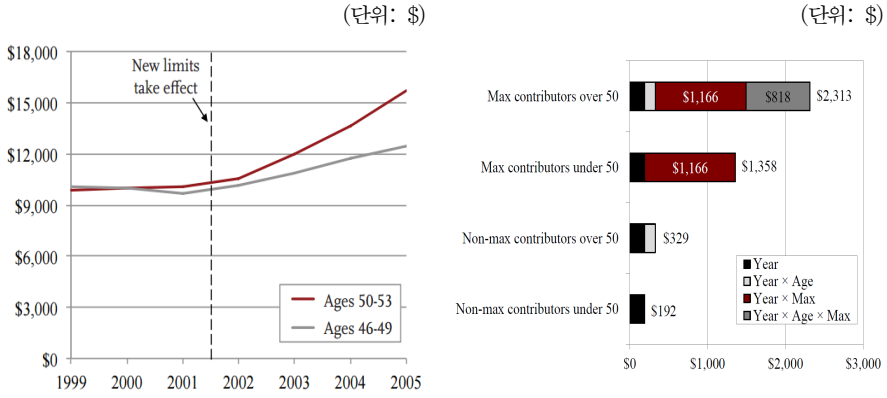
- 정부재정지출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득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세제지원을 세분화하는 사례도 있으나, 호주의 경우처럼 연금세제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세제체계를 단순화하는 사례도 존재함
- 호주 2007년 Superannuation 개혁: Simplified Super-annuation
 - 세제혜택 기준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연금 수급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2007년 연금개혁을 단행함
 - 첫째, 2007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이 퇴직연금을 수급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 과거 연령대별 일정 급여한도액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차등화 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2007년 7월 이후에는 60세가 넘으면 연금수급액 전액 비과세함으로써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함
 - 둘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고 연령별 기준을 정하지 않기로 함
 - * 연령대별로 복잡하던 최저세율 적용기준을 개인당 연간 50,000 달러로 통일함

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1) 미국의 추가기여제도 도입 효과

은퇴를 직전에 앞둔 퇴직세대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의 추가기여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Guan et al.(2015),¹⁰¹⁾ Rutledge et al.(2016)¹⁰²⁾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Ⅲ-8〉 추가기여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 납입액 변화
 미국의 401(k) 401(k), 403(b) 등



자료: Guan et al.(2015), "DO CATCH-UP CONTRIBUTIONS INCREASE 401(K) SAVING?", Working Paper 2015-10,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Rutledge et al.(2016), "Do Tax Incentives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Working Paper

Guan et al.(2015)는 추가납입제도(Catch-up Plan) 도입 전·후(2002~2005년)로 제도적용 대상자(50세 이상)와 미대상자(50세 미만)의 기여액 증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401(k) 추가납입제도 도입 이후 고령층은 연평균 14% 가량 납입보험료를 증액시킨 반면, 50세 이하 계층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 납입액 증가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utledge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추가납부를 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0세 미만인 가입자에 비해 연간 \$540를 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1) Guan et al.(2015), "DO CATCH-UP CONTRIBUTIONS INCREASE 401(K) SAVING?", Working Paper 2015-10,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102) Rutledge, Matthew S., April Yanyuan Wu, and Francis M. Vitagliano.(2014), "Do Tax Incentives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Working Paper 2014-17,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2) 재분배 효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개선

다양한 요인이 소득불평등도와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라 연금세제정책이 소득불평등도와 노인빈곤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세제혜택 확대로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각국의 공·사연금 지출규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EU 12개국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지출규모가 소득불평등도와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Goudswaard et al.(2012)¹⁰³⁾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지출액 증가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적연금의 지출액 증가는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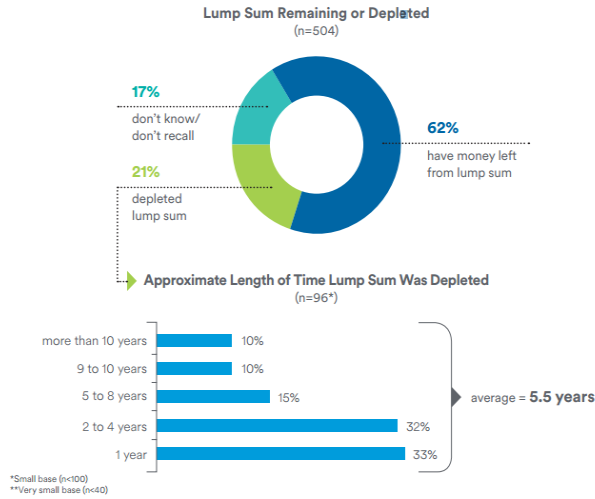
다.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

기대수명 증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일시금 선택자의 자산소진 현황을 조사한 MetLife(2016)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는 일시금으로 수급한 자금을 전부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5.5년 만에 퇴직급여액을 전부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시금 수급이 노후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03) Kees Goudswaard, Olaf van Vliet, Jim Been, and Koen Caminada(2012), "Pensions and Income Inequality in Old Age"

〈그림 Ⅲ-9〉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의 자산소진

(단위: %)



자료: Metlife(2017), "Paycheck or Pot of Gold Study"

이처럼 일시금보다는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기보다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이른바 연금퍼즐(Annuity Puzzle)¹⁰⁴⁾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ntolin et al.(2008)¹⁰⁵⁾는 OECD 국가의 은퇴시점 급여지급유형을 일시금, 프로그램 인출, 중신연금의 3가지를 주요 급여지급형태로 분류한 후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지급단계에서 개인의 선택이 정부세제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104) 연금퍼즐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의 다수의 연구결과, 연금퍼즐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연금가격 산정의 불공정성(높은 사업비, 사망률에 대한 과대추정 등), 유산상속, 의료비,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들 수 있음. Glickman, M. and Kuehneman, G.(2006)는 미국의 급여지급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는 은퇴자 개인의 성향이 아닌 가입된 제도유형으로 나타났음. 즉, 은퇴자는 자신이 속한 제도유형에 따라 급여형태가 바뀌는 것에 경직적인 태도를 보임. 즉, 연금지급이 일반화된 DB형 가입자는 일시금 전환을, DC형 가입자는 연금전환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단, DC형 가입자 중 보험수리적으로 계산된 연금액보다 높은 연금액이 제시될 경우(즉, 연금전환 시 사용되는 예정이율이 높을 수록) 연금전환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함

105) Antolin, P., Pugh, C., and Stewart, F.(2008), "Forms of Benefit Payment at Retirement",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6, OECD publishing

다. 또한, Rocha et al.(2010)¹⁰⁶⁾은 칠레, 호주, 유럽 3개국의 연금지급방식 비교를 통해 각국에서 연금화 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금화 비율은 80%, 칠레 70%, 덴마크 50%, 스웨덴 30%, 호주 10%로 나타나고 있다.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공적연금 존재 여부, 금융회사의 마케팅, 사회관습 등에 따라 연금화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기반하여 주요국에서는 개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중도인출이나 급여지급단계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급 의무화 등 지급방식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⁷⁾

1) 급여지급단계에서의 세제 차별화

(1) 급여인출 규제 및 수급방식별 세제차등

미국의 IRA 가입자는 59.5세가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통형 IRA의 경우 70.5세부터는 최소인출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해야 하며,¹⁰⁸⁾ 만약 인출액이 최소급여수준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의 50%를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Roth IRA는 최소인출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어 70.5세 이후에도 자유의사에 의해 인출이 가능하다.

106) Rocha, R., Vittas, D., Rudolph, H.(2010),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The World Bank

107) Rocha et al.(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WORLD BANK

108) 이는 IRA 제도의 경우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가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분배받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항임

〈표 III-13〉 주요국 사적연금제도의 급여 개시연령 및 지급 방식

구분		연령	지급방식
미국	Traditional IRAs	59.5세	연금 또는 일시금(70.5세 최소인출 규정)
일본	개인형 DC 연금	60세	연금 또는 일시금(70세까지 수급개시)
영국	NEST	55세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일시금 25% 비과세)

자료: Hagen and Kleinlein(2012); Oxera(2013)

영국은 급여지급 단계에서 가입자가 축적된 자산을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상품 등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축적된 자산 중 25%에 대해서는 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해당 인출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¹⁰⁹⁾

일본의 개인형 DC제도에서는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70세 이전에는 급여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급개시 연령 구간별로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차등 적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60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하나 연령별로 일정 가입기간¹¹⁰⁾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독일은 급여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지급은 62세가 된 시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9) 영국은 Finance Act 2012에 따라 2015년 4월 이전에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수급 가능하고 75%는 연금(Lifetime Annuity 또는 Income Drawdown)으로 수급해야 하는 연금화 수급 의무가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25%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조치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정책은 2015년 4월에 폐지됨에 따라, 나머지 적립금의 일시금 수급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수준에 따라 0~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https://www.gov.uk/income-tax-rates>)

110) 60세: 10년, 61세: 8년, 62세: 6년, 63세: 4년, 64세: 2년, 65세: 1개월 이상

〈표 Ⅲ-14〉 주요국의 급여수급 방식에 따른 세율 차등화

국가	제도유형	연금	프로그램인출	일시금
호주	적격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가능연령 이전: 한계세율 • 수급가능연령~59세: 15% 세율 적용 • 60세 이후: 비과세 		-
	비적격 퇴직연금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캐나다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칠레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특정금액: 비과세
덴마크		조기인출: 60% 과세, 은퇴 시: 한계세율 적용		
그리스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아일랜드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 이하: 비과세 € 20만~50만: 20% € 50만 초과: 한계세율
이스라엘	-	비과세	비허용	비허용
네덜란드	EUR 100,000 이하	한계세율 과세	비허용	비허용
	EUR 100,000 초과	비과세	비허용	비과세
뉴질랜드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스위스	-	한계세율 과세	비허용	자본소득 과세
영국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총 자산 25%: 비과세 초과액: 한계세율
미국	Roth IRA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기타	59.5세 이전: 한계세율 + 10% 추가 과세 59.5세 이후: 한계세율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14

(2) 퇴직급여 중도인출 규제 및 세제상 불이익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는 59.5세가 되기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최초 주택구입, 고등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별칙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전통형 IRA의 경우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하는 경우는 연방소득세 납부와 10%의 조기인출 벌칙을 부여하고 있으며,¹¹¹⁾ Roth IRA에서는 계정 설

111) 최초 주택구입, 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다음과 같은 특정사유에 한해서는 벌칙 조항 없이 인출이 가능함

-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입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 총소득의 7.5%를 초과한 의료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가입자,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위한 교육비 충당, 주택구입 또는 건축 및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이 5년이 되지 않거나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10%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영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조기은퇴, 기대여명이 일 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¹¹²⁾ 이외 사유에 대하여 55세 이전에 연금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55%의 세율을 적용한다.¹¹³⁾ 한편, 일본 개인형 DC연금에서도 중증 장애 및 사망의 경우에만 장애급여 및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기타 사유에 의한 중도 인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표 Ⅲ-15〉 주요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출가능 연령	59.5세	55세	55세	60세
중도인출 시 패널티	10% 가산세	55% 세율	특정사유 외 금지	특정사유 외 금지

자료: 최경진(2015),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법 다양화 방안」, 근로복지공단

2) 급여수급 방식별 세제차등화 효과

연금지급 방식별 세제혜택의 차이에 따라 연금지급단계에서의 가입자의 수급방식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Chetty et al.(2013)¹¹⁴⁾은 덴마크¹¹⁵⁾의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제도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지원을 삭감하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연금납입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였

112) <https://www.gov.uk/early-retirement-pension/personal-and-workplace-pensions>

113) <https://www.gov.uk/early-retirement-pension/>

114) R. Chetty, J. N. Friedman, S. Leth-Petersen, T. H. Nielsen, and T. Olsen(2013), "Subsidies vs. Nudges: Which Policies Increase Saving the Mos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115) 덴마크는 은퇴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또는 연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유형 등 두 가지 형태의 과세이연 은퇴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음

다. 이를 위해 1999년 덴마크 정부에서 소득세 최상위 과세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퇴시점에 일시금 형태의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삭감한 정책¹¹⁶⁾ 시행 전·후 가입자의 기여액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세제지원에 대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는 계층의 일시금 지급형에 대한 불입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제지원 축소가 이루어진 집단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불입금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일시금 선택 비율이 1990년대에 80%에 달하는 등 일시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Disney(2009),¹¹⁷⁾ Clements et al.(2013)는 호주에서의 일시금 인출이 높은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설계방식,¹¹⁸⁾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세제체계, 근로기간 동안의 주택구입 등으로 인한 잔여부채에 대한 청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여 일시금 인출을 억제하는 적정급여한도제(Reasonable benefit limit)를 시행하여,¹¹⁹⁾ 일시금수급자 비중은 감소하고 연금수급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116) ① 연금으로 수급하기로 약정한 계좌에 대한 불입금, ② 지급형태와는 관계없이 낮은 과세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유지함

117) Disney, R.(2009), "Australia: Issues in the Tax Treatment of Pensions and Housing", In Australia's Future Tax and Transfer Policy Conference, Melbourn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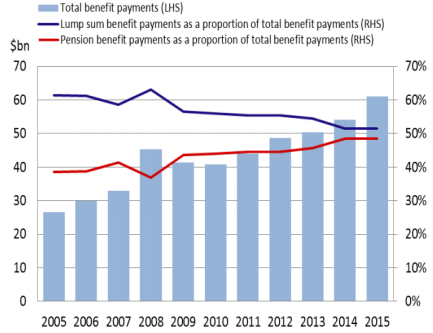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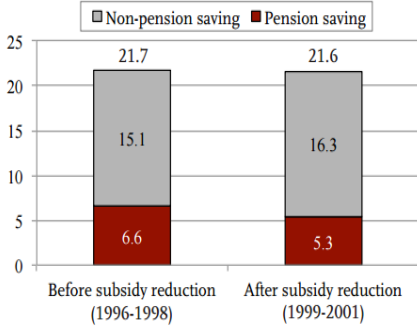
118) Bateman et al.,(2014), "The first pillar means-test discourages the use of the second pillar savings as a stream of resources over retirement while incentivizing early spending, sometimes on means test-exempt owner-occupier housing"; Bateman, H. and Piggott, J.(2010), "Too Much Risk to Insure? The Australian (non-) Market for Annuities"

119) 류건식(2013),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그림 Ⅲ-10〉 덴마크와 호주의 퇴직급여 수급단계에서의 주요 통계

덴마크 퇴직연금 세제변화에 따른 저축액 변화
(단위: \$)

호주의 지급 방식 유형별 변화추이
(단위: \$)



자료: Chatty et al.(2013), “Subsidies vs. Nudges: Which Policies Increase Saving the Mos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APRA(2016), “GOVERNANCE & CULTURE IN SUPERANNUATION”

한편, 세제혜택과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 도입이 개인의 연금화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Kling et al.(2014)¹²⁰⁾의 연구결과에서도 세제혜택 확대 시 퇴직자산을 연금화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제정책이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 완화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책임준비금(연금부채)을 추정연금부채의 100% 수준으로 완전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소적립비율(연금부채 대비 연금자산비율)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세 외에도 퇴직연금부채는 할인율, 임금상승률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

120) ALEXANDER KLING, ANDREAS RICHTER AND JOCHEN RUPF(2014), “ANNUITIZATION BEHAVIOR: TAX INCENTIVES VS. PRODUCT DESIGN”, Astin Bulletin 44(3), pp. 535-558

라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 매년 퇴직연금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DB형 제도를 운영 중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림 Ⅲ-11〉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및 적립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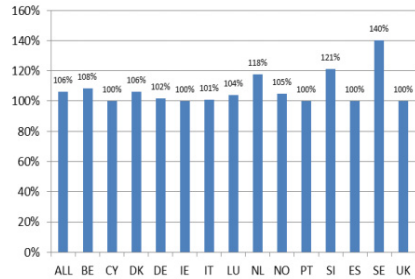
주요국의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규제

(단위: %)

국가	최소적립비율
미국	100
영국	100
독일	104.5
네덜란드	105

유럽 주요국의 퇴직연금 적립비율

(단위: %)



주: 최소적립비율 = 연금자산 / 연금부채

자료: NAPF(2008), UK Pensions Regulation Compared; EIOPA(2016), Financial Stability Report

한편, 주요국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사용자 특히, 영세사업장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 발생이 빈번한 경우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사외적립과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기업경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확대에 의한 기업의 급격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재무적 지원 또한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사용자에 대한 재무적 지원: 세액공제, 손비처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등과 같은 고용주지원 IRA 제도(Employer-sponsored IRA), 영국의 NEST, 일본의 퇴직연금공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고용주지원 IRA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IRA를 설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고용주지원 IRA 제도에는 1978년 도입된 SEP IRA와 1996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도입된 SIMPLE IRA 등이 있다.¹²¹⁾ 미국 정부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설정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도입초기 운영비용(Startup costs)의 50%에 한해 연간 최대 \$500 한도로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¹²²⁾ 다만, 연소득 규모가 \$5,000 이상인 근로자가 100명 이하이며, 신규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고용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이 비용상의 문제로 퇴직급여제도를 미시행하는 사례가 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59년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를 도입하였다.¹²³⁾ 일본 정부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해서 전액 손비처리를 해주고, 신규로 가입하는 사용자에게 대해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정부에서 직원당 ₩5,000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를 보조해준다. 한편, 사용자가 ₩18,000 이하의 종업원의 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증액분에 대해 1년간 1/3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¹²⁴⁾

121) SEP IRA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SIMPLE IRA 제도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입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함

122) 미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Retirement Plans Startup Costs Tax Credit

123) http://www.mhlw.go.jp/bunya/roudoukijun/taisilyokukin_kyousai/ippanchuutai/

124) http://www2.mhlw.go.jp/topics/seido/rousei/chutaikyo/chutaikyo_02.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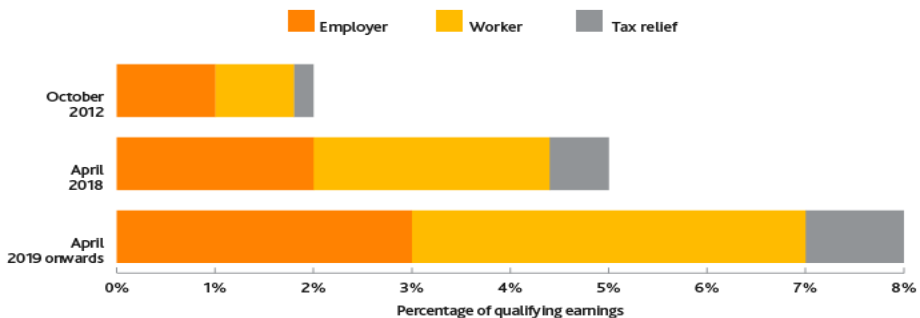
2) 단계적 보험요율 인상

뉴질랜드 정부는 KiwiSaver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1,000를 KiwiSaver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매년 \$40의 계좌수수료도 지원해 주었다. 한편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사용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 \$20)까지 사용자 명의의 KiwiSaver 계좌에 납입하여 주었다(Members Tax Credit). 또한, 사용주의 경우 의무적인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액에 대응하여 직원별로 주당 \$20까지 사용자를 지원하게 되었다(Employer Tax Credit).

특히, 정책변화로 인한 고용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분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4월 이후 최저분담금은 세전 주급의 1%, 2009년 4월 이후는 2%, 2010년 4월 이후는 3%, 2011년 4월 11일 이후는 4%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NEST 제도의 경우에도 최소기여금은 2012년에는 2%, 2016년에 5%, 2017년에 8%로 단계별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이 중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은 역시 각각 1%, 2%, 3%로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절감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림 III-12〉 영국 NEST 제도의 보험요율 및 정부지원



자료: NEST 홈페이지(<https://www.nestpensions.org.uk>)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제정책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III-17>과 같다.

<표 III-16>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요국 세제정책 활용 사례 요약

구분	대표 사례
퇴직연금 가입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급여축소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가입 유도 - 독일: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 아이헬보조금 지원 - 영국: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적용제외제도 도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지원: 호주 Super Co-Contribution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영국 NEST, 일본 개인형연금제도 - 중고령층: 미국 Catch-up Policy, 호주, 네덜란드 등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중도인출 규제 및 세제상 불이익 - 미국: (1) 전통형 IRA 조기인출 시 연방소득세 및 10% 벌칙 부여 (2) Roth IRA: 조기인출 시 소득세 및 10% 범칙금 부여 - 영국: 55세 이전 연금적립금 인출 시 55% 세율 적용 • 급여수급 방식 제한 및 세제 차등화 - 대다수 국가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수령에 대해 관대한 세율 적용
사용자 재무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기업 사용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 - 미국: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도입초기 운영비용 50% 지원(연간 \$500 한도 3년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일본: 사용자 기여금 전액 손비처리(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신규 가입 사용자에게 대해 1년간 납입보험료 50% 보조

IV. 퇴직연금 세제효과 분석

1. 소득계층별 가입유인 효과: 가입시점효과 분석

여기서는 최근 변경된 퇴직연금 공제 방식 변경이 소득계층별 가입유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살펴본 공제 방식 변경 전후인 2013년과 2014년 동안 1인당 세제혜택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가입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총급여기준 5천 5백만 원 이하 가입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적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높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이들 소득계층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 퇴직연금 세제혜택 방식변화 효과(2013년 vs 2014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귀속 연도	소득수준	가입자			세제혜택 ¹⁾	
		인원	금액		총금액	1인당 금액
2013	전체	60,370	102,089	(169)	29,165	(48.3)
	5천만 원 이하	24,773	24,879	(100)	4,057	(16.4)
	5천만 원~1억 원	22,763	44,531	(196)	12,690	(55.7)
	1억 원 초과	12,834	32,679	(255)	12,418	(96.8)
2014	전체	52,042	103,965	(200)	13,106	(25.2)
	5천만 원 이하	14,405	17,070	(119)	2,561	(17.8)
	5천만 원~1억 원	23,123	49,554	(214)	6,065	(26.2)
	1억 원 초과	14,514	37,341	(257)	4,481	(30.9)

주: 1) 2013년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2014년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산출

2) () 안은 1인당 평균 공제대상액(단위: 만 원)

자료: 국세청, 2014, 2015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

즉, 다른 소득계층에 반해 5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1인당 세제혜택은 2013년 16만 4천 원에서 2014년 17만 8천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는 약 1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렇게 중산층 이하에서 오히려 가입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낮은 세액공제율, 수수료 인하 외에 연금세제 변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¹²⁵⁾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사적연금 효과분석과 유사하다.¹²⁶⁾

이렇게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제도 변화가 없었던 대체가능한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¹²⁷⁾

〈표 IV-2〉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대체금융상품 가입변화(14년/13년)
(단위: %, 명)

구분	금융상품군(A)		금융상품군(B)		연금보험	
	변화 비율	변화 빈도	변화 비율	변화 빈도	변화 비율	변화 빈도
계속 가입	22.7	(3,684)	18.7	(2,434)	2.9	(93)
가입 중단	4.2	(675)	4.0	(515)	4.9	(160)
새로 가입	4.4	(713)	4.1	(533)	5.1	(165)
계속 미가입	68.8	(11,163)	73.2	(9,506)	87.1	(2,829)
합계	100.0	(16,235)	100.0	(12,988)	100.0	(3,247)

주: 1) A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
 2) B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
 3) 계속 가입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가입, 가입 중단은 2013년에 가입하고 2014년에 미가입, 새로 가입은 2013년에 미가입하고 2014년에 가입, 계속 미가입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미가입한 경우임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패널조사 2013년 및 2014년 기준(7차, 8차 조사)으로 분석한 것임

125) 보험소비자조사(2016)에 의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라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는 72.7%였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저소득층의 90.6%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
 126) 강성호(201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람
 127) 이와 관련하여 강성호(201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람

한국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 이하(5,500만 원¹²⁸⁾ 이하) 근로자의 금융상품 가입 및 중단(혹은 해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에 비해 다른 금융상품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V-2〉 참조).

이에 의하면, 퇴직연금, 연금보험,¹²⁹⁾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A)는 가입중단(4.2%)보다 새로 가입(4.4%)한 비율이 약 0.2%p 높았다. 퇴직연금,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B)는 가입중단(4.0%)보다 새로 가입(4.1%)한 비율이 약 0.1%p 높았다. 단일 상품으로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금보험의 경우는 가입중단(4.9%)보다 새로 가입(5.1%)한 비율이 약 0.2%p 높았다.

이는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중산층 이하 계층에 유리하도록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변경이 추진되었고 소득수준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¹³⁰⁾ 연금저축에 비해 다른 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된 것은 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오해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의 가입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연금세제 및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즉, 연금세제 개편 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연금세제 개편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연금저축이 재테크가 아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세액공제 방식은 유지되었지만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이 700만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8) 총급여 기준 (연간)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5%(그 이상은 12% 적용)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함

129) 연금소득에 비과세되는 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하고 있음

130) 국세통계연보(2014, 2015)를 통해 나타난 2013년 대비 2014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자의 소득은 0.5%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연금저축은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3〉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 확대 효과(2014년 vs 2015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귀속연도	소득수준	가입자			세제혜택 ¹⁾	
		인원	금액		금액	
2014년	전체	52,042	103,965	(200)	13,106	(25.2)
	5천만 원 이하	14,405	17,070	(119)	2,561	(17.8)
	5천만 원~1억 원	23,123	49,554	(214)	6,065	(26.2)
	1억 초과	14,514	37,341	(257)	4,481	(30.9)
2015년	전체	404,850	684,841	(169)	84,751	(20.9)
	5천만 원 이하	126,965	63,728	(50.2)	9,559	(7.5)
	5천만 원~1억 원	161,571	292,532	(181)	35,762	(22.1)
	1억 원 초과	116,314	328,580	(283)	39,430	(33.9)

주: 1) 2013년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2014년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산출
 2) () 안은 1인당 평균 공제대상액(단위: 만 원)
 자료: 국세청, 2014, 2015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

〈표 IV-3〉을 통해 볼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은 전체적으로 세제혜택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가입유인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동일 세액공제 방식하에서는 세제혜택 확대는 가입유인 증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 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후소득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부머 등에 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른 효과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시 가입 확대 효과와 세제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가입 확대 효과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별로 소득계층별 가입 확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률 변화를 살펴본다. 여기서 세제효과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수급시점에 영향을 주어 소득계층별로 세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른 세제효과를 사업주 부담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입시점에는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발생되지 않고, 수급 시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되므로 여기에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른 효과를, 가입시점에서의 가입 확대에 따른 효과와 수급시점의 이연퇴직소득세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계층별 퇴직연금 가입 확대 효과

1) 분석가정 및 분석 방법¹³¹⁾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개인의 노동이력이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근인 제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분석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부 계획안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정부의 당초 확대 계획 일정¹³²⁾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을 시작 시점으로 하여 확대 계획 일정이 2년씩 순연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상용근로자로 하였다.¹³³⁾ 셋째, 소득계층 구분은 OECD 방식에 준하여, 저소득층은 중위근로소득(Median)의 50% 이하, 중산층은 중위근로소득(Median)의 50~150% 이하, 고소득층은 중위근로소득(Median)의 150%를 초과하는 소득계층으로 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분석한다.

131) '강성호·최장훈(2017),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고령화리뷰』, 제8호, 보험연구원을 참고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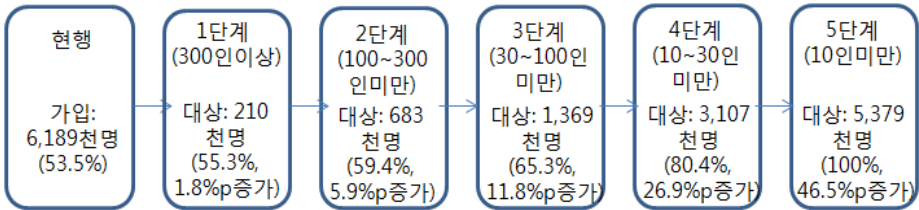
132) 앞의 '〈표 II-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참조 바람

133) 2017년 7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대상이 되는 공무원, 자영업자 등은 분석에서 제외됨

2) 분석결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면 대규모 사업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전 근로자 퇴직연금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림 IV-1>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1단계) 추가되는 가입자는 21만 명으로, 가입률은 1.8%p 증가하여 55.3%로 추정된다. 2단계(100인 이상~300인 미만)에서 4단계(10인 이상 30인 미만)까지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가입률은 각각 59.4%, 65.3%, 80.4%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전근로자 퇴직연금 시대의 도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IV-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별 가입률 변화



주: 1) 확대 단계는 정부안에 따라 사업장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임
 2) 추가대상은 확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편입될 사업장과 상용근로자임

이러한 확대과정을 소득계층별로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표 IV-4>과 같이 현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가입 비중¹³⁴⁾을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고소득 근로자 비중(61.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4) 소득계층별 가입 비중은 전체대상자에서 소득계층별(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함

〈표 IV-4〉 사업장 규모별 · 소득계층별¹⁾ 퇴직연금 가입 비중

(단위: %)

사업장 규모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10인 미만	15.9%	75.6%	8.5%	100.0%
10~30인 미만	9.5%	75.7%	14.8%	100.0%
30~100인 미만	4.9%	65.8%	29.2%	100.0%
100~300인 미만	3.9%	63.8%	32.3%	100.0%
300인 이상	2.0%	36.9%	61.2%	100.0%
전체	6.4%	59.3%	34.3%	100.0%

주: 1) 저소득층은 중위근로소득(Median)의 50% 이하, 중산층은 중위근로소득의 50~150% 이하, 고소득층은 중위근로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소득계층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8차 자료를 활용

앞의 분석가정과 〈표 IV-4〉에서의 소득계층별 가입 비중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가입 확대 효과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이 먼저 확대된 후 저소득층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현행(확대 전) 소득계층별 퇴직연금 가입률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각각 43.2%, 49.3%, 66.2%로 나타나 전체 가입률은 53.5%로 추정되었다(〈표 IV-5〉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확대 시 모든 소득계층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 10인 미만까지 확대되는 5단계에 가서야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입자가 일시에 증가하여 소득계층에 구분 없이 모두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업주 부담 문제로 인해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가입회피가 발생하게 되면 정책효과는 대규모 사업장의 고소득층에서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근로자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역진적일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역진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 확대 시 저소득층은 현재 43.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의무가입이 완성되는 5단계에서는 56.8%p 증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소득 강화가 달성되겠지만, 그만큼 영세사업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전자금의 부족을 경험할 우려도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과정에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된다.

〈표 IV-5〉 퇴직연금 도입 확대 시 소득계층별 가입률 변화

(단위: %, %p)

확대 단계 ¹⁾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현행(확대 전)	43.2	49.3	66.2	53.5
1단계(2018년)	44.2 (1.0)	51.7 (2.4)	74.7 (8.5)	57.5 (4.0)
2단계(2019년)	45.6 (2.4)	54.5 (5.2)	78.1 (11.9)	60.4 (6.8)
3단계(2020년)	48.5 (5.3)	60.0 (10.7)	83.3 (17.1)	65.6 (12.1)
4단계(2021년)	60.6 (17.4)	74.0 (24.7)	91.3 (25.1)	77.7 (24.2)
5단계(2024년)	100.0 (56.8)	100.0 (50.7)	100.0 (33.8)	100.0 (46.5)

주: 1) 확대 단계는 정부안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임

2) ()는 현행과 각 단계별 가입률의 격차(%p)임

자료: 강성호·최장훈(2017),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고령화리뷰』, 제8호, 보험연구원

나. 이연퇴직소득세 추정 및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는 사업주 부담을 퇴직연금으로 강제화하는 것이므로 수급 시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를 고려하여 수급 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분석가정을 따랐으며, 적립금이 동일할 경우와 현실의 실태자료를 반영한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IV-6>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억 원¹³⁵⁾의 퇴직적립금(사업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에 따른 퇴직급여세율, 수혜율 등을 살펴보았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전인 2016년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53.5%이며, 동 가입률을 활용하여 미가입자까지 고려한 1인당 평균 퇴직연금 적립액은 5,350만 원¹³⁶⁾으로 추정된다. 동 적립액을 모두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될 경우 추정되는 퇴직소득세는 45만 원¹³⁷⁾이 되며, 이를 적립액 대비 퇴직소득세 비율(퇴직급여세율)은 0.84%¹³⁸⁾이다.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게 되며 이때 세제혜택은 13.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립액 대비 세제혜택 비율로 표현하면 0.25%이며, 동 수치는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제혜택률이 된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세제혜택금액과 세제혜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V-6>의 확대단계의 현행단계 참조).

135) 동 분석과 관련하여 적립금 2억 원의 세제효과는 <부록 IV>를 참고하기 바람

136) 퇴직연금적립액(1억 원) × 가입률(가입자 / 전체근로자) = 5,350만 원

137) '환산퇴직소득세 / 12 × 가입기간'으로 산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부록 IV>를 참고하기 바람

138) 동 세율은 소득공제 후 산출되는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므로 법적의미에서의 퇴직소득세율과는 다름. 다만, 여기서는 공제금액까지 포함한 적립금이 수급자의 실질적인 퇴직소득이라는 점에서 적립금 대비 비율로 산출함

〈표 IV-6〉 퇴직연금 확대단계별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적립금 1억 원 동일¹⁾
(단위: 만 원, %)

확대단계	구분	소득계층 ²⁾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현행	현행 가입률	43.2	49.3	66.2	53.5
	적립액(A)	4,320	4,930	6,620	5,350
	퇴직소득세액(B)	20.5	35.1	75.7	45.2
	세제혜택금액(C)	6.1	10.5	22.7	13.6
	퇴직급여세율(B/A)	0.47	0.71	1.14	0.84
	수혜율(C/A)	0.14	0.21	0.34	0.25
1단계	현행 가입률	44.2	51.7	74.7	57.5
	적립액(A)	4,420	5,170	7,470	5,750
	퇴직소득세액(B)	22.9	40.9	96.1	54.8
	세제혜택금액(C)	6.9	12.3	28.8	16.4
	퇴직급여세율(B/A)	0.52	0.79	1.29	0.95
	수혜율(C/A)	0.16	0.24	0.39	0.29
2단계	현행 가입률	45.6	54.5	78.1	60.4
	적립액(A)	4,560	5,450	7,810	6,040
	퇴직소득세액(B)	26.2	47.6	104.2	61.8
	세제혜택금액(C)	7.9	14.3	31.3	18.5
	퇴직급여세율(B/A)	0.58	0.87	1.33	1.02
	수혜율(C/A)	0.17	0.26	0.40	0.31
3단계	현행 가입률	48.5	60	83.3	65.6
	적립액(A)	4,850	6,000	8,330	6,560
	퇴직소득세액(B)	33.2	60.8	116.7	74.2
	세제혜택금액(C)	10	18.2	35	22.3
	퇴직급여세율(B/A)	0.68	1.01	1.40	1.13
	수혜율(C/A)	0.21	0.30	0.42	0.34
4단계	현행 가입률	60.6	74	91.3	77.7
	적립액(A)	6,060	7,400	9,130	7,770
	퇴직소득세액(B)	62.2	94.4	135.9	103.3
	세제혜택금액(C)	18.7	28.3	40.8	31
	퇴직급여세율(B/A)	1.03	1.28	1.49	1.33
	수혜율(C/A)	0.31	0.38	0.45	0.40
5단계	현행 가입률	100	100	100	100
	적립액(A)	10,000	10,000	10,000	10,000
	퇴직소득세액(B)	167	167	167	167
	세제혜택금액(C)	50.1	50.1	50.1	50.1
	퇴직급여세율(B/A)	1.67	1.67	1.67	1.67
	수혜율(C/A)	0.50	0.50	0.50	0.50

주: 1) 모든 소득계층에서 1억 원의 퇴직적립금이 발생한다고 가정

2) 소득계층은 분석가정에 따라 OECD 방식으로 소득계층 구분

이러한 결과를 의무화 단계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100%의 가입률을 가정하는 5단계를 제외하면 고소득층에서 세제혜택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자에게만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세제혜택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을 내포한다. 이를 고려하면 단계적 의무화 과정에서 도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100% 가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가입확률이 떨어져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2억 원의 이연퇴직 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경우 앞의 1억 원에 비해 세제혜택률이 높아지나 소득계층별로 볼 때 세제효과는 더욱 역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⁹⁾ 이러한 결과는 적립액이 클수록 소득공제 효과로 인해 세제혜택의 역진성이 강해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표 IV-7>에서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별 퇴직급여세율, 수혜율 등을 살펴보았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전인 2016년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53.5%로, 동 가입률을 활용하여 미가입자까지 고려한 1인당 평균 퇴직연금 적립액은 3,277만 원¹⁴⁰⁾으로 추정되었다. 동 적립액을 모두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될 경우 추정되는 퇴직소득세는 0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과세표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인해 과세표준 소득이 0원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¹⁾ 따라서, 동 적립액을 모두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혜택(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또한 없게 된다.¹⁴²⁾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만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과 같이 실질적으로 퇴직 적립금이 낮다면, 연금화에 의한 세제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139) 적립금 2억 원의 세제효과는 <부록 IV>를 참고하기 바람

140) <표 IV-7> 퇴직연금 확대단계별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실태조사 활용'을 참조하기 바람

141)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와 관련내용은 <부록 II>를 참고하기 바람

142) 동 분석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부록 IV>를 참고하기 바람

의무화 단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00%의 가입률을 가정하는 5단계까지 고려하더라도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적어 공제 후 과세표준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연금화에 따른 세제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7〉의 결과해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소득계층별 평균소득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각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 외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세제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특히 중산층에서 세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되더라도 연금화의 유인은 크지 않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현행 퇴직소득세 체계하에서는 이연퇴직 적립금이 많은 경우 세제혜택의 역진성이 우려되고, 적립금이 적을 경우에는 연금화 유인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IV-7〉 퇴직연금 확대단계별 소득계층별 세제효과: 실태조사 활용¹⁾
(단위: 만 원, %)

확대단계	구분	소득계층 ²⁾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현행	현행 가입률	43.2	49.3	66.2	53.5
	퇴직소득세액(A)	637	2,280	7,232	3,277
	세제혜택금액(B)	0	0	90.4	0
	적립액(C)	0	0	27.1	0
	퇴직급여세율(A/C)	0.00	0.00	1.25	0.00
	수혜율(B/C)	0.00	0.00	0.37	0.00
1단계	현행 가입률	44.2	51.7	74.7	57.5
	퇴직소득세액(A)	652	2,391	8,161	3,522
	세제혜택금액(B)	0	0	112.7	1.3
	적립액(C)	0	0	33.8	0.4
	퇴직급여세율(A/C)	0.00	0.00	1.38	0.04
	수혜율(B/C)	0.00	0.00	0.41	0.01
2단계	현행 가입률	45.6	54.5	78.1	60.4
	퇴직소득세액(A)	673	2,521	8,532	3,700
	세제혜택금액(B)	0	0	121.6	5.6
	적립액(C)	0	0	36.5	1.7
	퇴직급여세율(A/C)	0.00	0.00	1.42	0.15
	수혜율(B/C)	0.00	0.00	0.43	0.05
3단계	현행 가입률	48.5	60	83.3	65.6
	퇴직소득세액(A)	715	2,775	9,101	4,018
	세제혜택금액(B)	0	0	135.2	13.2
	적립액(C)	0	0	40.6	4
	퇴직급여세율(A/C)	0.00	0.00	1.49	0.33
	수혜율(B/C)	0.00	0.00	0.45	0.10
4단계	현행 가입률	60.6	74	91.3	77.7
	퇴직소득세액(A)	894	3,423	9,975	4,759
	세제혜택금액(B)	0	0	165.5	31
	적립액(C)	0	0	49.6	9.3
	퇴직급여세율(A/C)	0.00	0.00	1.66	0.65
	수혜율(B/C)	0.00	0.00	0.50	0.20
5단계	현행 가입률	100	100	100	100
	퇴직소득세액(A)	1,475	4,625	10,925	6,125
	세제혜택금액(B)	0	27.8	222.5	63.8
	적립액(C)	0	8.3	66.8	19.1
	퇴직급여세율(A/C)	0.00	0.60	2.04	1.04
	수혜율(B/C)	0.00	0.18	0.61	0.31

주: 1) 노동패널 18차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퇴직적립금 적용

2) 소득계층은 분석가정에 따라 OECD 방식으로 소득계층 구분

3.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퇴직연금 환경변화 중 퇴직연금 가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26일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적립 IRP에 대한 추가 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적립IRP에 대한 추가 가입대상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분석대상은 앞의 <표 II-2>에서와 같이 정부에서 추가 대상으로 정한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의 4개 집단으로 하였다.

둘째, 정부의 공식자료에서 발표된 통계치를 활용하되 각 집단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각 추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¹⁴³⁾는 명확한 통계가 있어서 제시된 통계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통계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와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퇴직급여 적용률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즉,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수’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에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상용직일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 적용을 대부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들 비정규직 중 퇴직급여가 적용되는 비율 만큼 추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 수’에 ‘정규직의 퇴직금

143)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이 있으나, 여기서는 공무원과 사학 연금 가입자로 하였음.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가입자 규모는 매우 적어 추정에 고려하지는 않았음

적용률¹⁴⁴⁾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상용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들 상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일 것이다.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 수에 정규직의 퇴직금 적용률을 곱하여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표 IV-8>에 제시하고 있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적용률은 <표 IV-9>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IV-8> 사업체 수 및 종사자지위별 종사자 수(2015년)

(단위: 천 개소, 천 명)

구분	사업체 수	총종사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규모	1,890	16,920	1,185	1,141	12,151	2,443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표 IV-9> 임금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률(2015년 8월 기준)

(단위: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69.9	84.0	40.5

주: '15년부터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 여부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셋째, 소득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본으로 하되(표 IV-10) 참조), 조사대상자별 상대 소득비율을 활용하여 적용소득을 산출하였다.

144) 단, 퇴직금 적용률은 퇴직급여(퇴직연금 + 퇴직금) 적용률에서 퇴직연금 적용률을 뺀 값으로 하였음

〈표 IV-10〉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2015년)

(단위: 만 원)

규모별	전체임금	상용임금	임시일용임금
전규모(5인 이상)	330	349	142
5~9인	237	254	126
10~29인	284	306	143
30~99인	323	335	166
100~299인	338	349	155
300인 이상	485	502	133

자료: 고용노동통계/통계DB/임금근로시간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상용근로자 소득(349만 원)의 97.4%인 340만 원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상용근로자의 97.4%로 본 이유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주의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상소득은 상용근로자에 비해 97.4%(5,048 / 5,183)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IV-11〉 참조). 다만, 동 산출 방법은 가구주의 경상소득을 활용하여 종사상지위별 상대비율을 산출한 것이므로 개인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해당 비율만 활용하였다. 따라서, 개인기준 상용임금에 동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산출하였다. 물론 가구주와 근로소득자 개인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비율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표 IV-11〉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단위: %, 명, 세, 만 원)

자산, 부채, 소득 분류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무직 등
가구분포(%)	100.0	38.0	14.5	26.9	20.6
가구원 수(명)	3.0	3.3	2.7	3.3	2.1
가구주 연령(세)	51.4	42.2	50.7	52.8	66.9
경상소득(만 원)	4,012	5,183	2,320	5,048	1,69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청, KOSIS를 활용하여 재구성

특수지역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공무원의 보수를 대푯값으로 하되 월평균 291만 원($83.4\% \times 349$ 만 원)으로 가정하였다. 동 가정을 설정한 근거로,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2015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의 83.4% 수준이고(〈표 IV-12〉 참조), 1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은 편의상 100~299인의 월평균 임금인 349만 원으로 하였고 때문이다(〈표 IV-10〉 참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무원에 비해 사학, 군인의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현실적으로는 특수지역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표 IV-12〉 공무원 보수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5	2016
민간임금접근율	84.4	83.4	83.2

주: 1) 민간임금접근율: 민간의 1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종사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수치
 자료: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 e-나라지표, 공무원 보수 추이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와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의 소득은 각각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임금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로는, 앞의 가입자 규모 추정에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와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수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각각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규모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소득 또한 이들 집단의 평균값을 활용한 것이다.

넷째, 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의 4%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적립 IRP는 임의가입 성격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모형을 단순화하고, 평균적인 가입자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동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4%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였다. 동 보험요율은 2015년 1인당 IRP 월평균 납부액 수준인 14만 원¹⁴⁵⁾에서 상용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349만 원을 나누는 형식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대상자별 소득과 적용 보험요율은 〈표 IV-13〉과 같다.

145) ‘〈표 IV-3〉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액 확대 효과’의 2015년 1인당 세액공제대상금액(연간 169만 원)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표 IV-13〉 퇴직연금 가입 추가 대상자별 적용소득

(단위: 만 원)

대상자	소득	보험요율
- 자영업자	340(349 × 97.4%)	4%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42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349	
- 직역연금 가입자	291(349 × 83.4%)	

자료: 고용노동통계/통계DB/임금근로시간

다섯째,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 20년 두 가지의 경우로 하였으며, 수급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였다.

여섯째, 투자수익률은 임금상승률, 금리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 기준 실질가치로 산출하였다.

나. 분석결과

1) 대상 유형별 대상자 규모¹⁴⁶⁾ 추정

앞의 가정에 의해 2017년 7월 26일부터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자는 7,315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영업자 1,185천 명,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989천 명,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3,706천 명, 직역연금 가입자는 1,435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146) 조선비즈(2017. 6. 22), “IRP 문턱 낮아진다… 공무원·자영업자도 700만원 세액공제”에 의하면, 대상자는 자영업자 약 580만 명,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가입자 약 150만 명을 합쳐 730만 명으로 추정함

〈표 IV-14〉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 규모 추정

(단위: 천 명)

대상자	규모
- 자영업자 ¹⁾	1,185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²⁾	1,435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³⁾ (근속기간 1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임시 및 일용근로자 2,443천 명, 적용률 40.5% 적용	989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⁴⁾ · 상용근로자 12,151 천 명 · 퇴직금 적용률 30.5% (퇴직급여 적용률 84.0% - 퇴직연금 적용률 53.5%)	3,706
- 전체	7,315

주: 1) 자영업자

2) 직역연금 가입자는 주어진 통계를 활용

3)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수'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 ×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적용률'

4)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수' = '상용근로자 수' × '정규직의 퇴직금 적용률'

자료: 고용노동통계/통계DB/임금근로시간

2) 대상 유형별 연금소득, 세제지원 및 과세 효과

여기서는 추정된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 유형별로 연금소득, 세제지원 및 과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연금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생애기간동안의 적립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적립액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유형별 월 소득에 보험요율 4%를 적용하면 해당 유형별 월 보험료가 산출되고 동 월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하면 유형별 적립액은 각각 1,632만 원, 684만 원, 1,675만 원, 1,396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4가지 유형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된 전체 집단의 평균 적립액은 1,479만 원으로 산출된다(〈표 IV-15〉 참조).

〈표 IV-15〉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별 적립 IRP 적립액 산출
(단위: 만 원)

대상자	월소득	월보험료	적립액 (10년납)	적립액 (20년납)
- 자영업자	340	13.6	1,632	3,263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42	5.7	684	1,367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3,49	14.0	1,675	3,350
- 직역연금 가입자	2,91	11.6	1,396	2,792
소계	3,08	12.3	1,479	2,959

이렇게 산출된 적립액을 연금수급기간으로 나누게 되면 연금액이 산출되는데, 앞의 가정에 따라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연금수급액은 전체 기준으로 10년 납부 시 74만 원(20년 납부 시 148만 원)으로 추정된다. 연금액이 추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세제수준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 모두는 연금액이 낮아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간 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⁴⁷⁾ (〈표 IV-16〉 참조)

〈표 IV-16〉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별 연금소득 및 세제지원 효과
(단위: 만 원)

구분		연금액(연)		세액공제	연금 소득세	순세제 혜택
		20년 수급	10년 수급			
- 자영업자	10년 납부	81.6	163	245	0	245
	20년 납부	163	326	490	0	490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0년 납부	34.2	68.4	103	0	103
	20년 납부	68.4	137	205	0	205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10년 납부	83.8	168	251	0	251
	20년 납부	168	335	503	0	503
- 직역연금 가입자	10년 납부	69.8	140	209	0	209
	20년 납부	140	279	419	0	419
소계	10년 납부	74.0	148	222	0	222
	20년 납부	148	296	444	0	444

147) 〈부록 II〉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참조 바람

따라서, 생애기간 동안 고려한 세제혜택은(생애 순세제혜택)은 납부시점의 세액 공제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제외한 값이 되는데, 여기서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액인 222만 원이 생애 순세제혜택이 된다. 이는 <표 IV-15>에서 보듯이 10년 동안 총 납부한 적립액인 1,479만 원의 15%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유형별 세제혜택 수준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애 동안의 총근로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직역연금가입자는 직장의 안정성으로 인해 긴근로기간에 따른 적립액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순세제혜택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실에서의 다양한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연금소득세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에서 퇴직연금소득세 분석을 참고할 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납부금액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추가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에게 연금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는 연금세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도상 EET이지만 급여시점에 과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확대 대상자의 연금세제 효과는 EEE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 IV-16>의 결과해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앞의 <표 IV-7>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별 평균소득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각 집단별로 소득수준과 납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제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세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3)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조세지출

앞에서 산출한 추가 가입대상자 규모에 1인당 조세지원액을 곱하면 연간 지원액이 산출되고, 연간지원액에 납부기간을 곱하면 생애기간 동안의 지원액이 산출된다.

모든 추가가입자가 가입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연간 1조 6,230억 원 정도 조세지원(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기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가입자의 비율은 과세대상자 기준으로 4.2%¹⁴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범위 확대에 따른 조세지원은 연간 68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⁴⁹⁾

〈표 IV-17〉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별 연간 및 생애기간 지원액
(단위: 천 명, 십억 원)

대상자	대상자 규모	연간 ¹⁾	생애기간 ²⁾	
			10년 납부	20년 납부
자영업자	1,185	290	2,900	5,800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989	101	1,014	2,028
퇴직급여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3,706	931	9,312	18,625
직역연금 가입자	1,435	300	3,005	6,009
전체	7,315	1,623	16,232	32,465
(가입률 4.2% 적용 시)	307	68	682	1,364

주: 1) 연간지원액 = 대상자 규모 × 1인당 조세지원액(연)
 * 1인당 조세지원액(연) = 세액공제(적립액 × 세액공제율) - 연금소득세
 2) 생애기간지원액 = 연간지원액 × 납부기간(연)

148) 과세대상자 923만 명,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자 38만 명임(38 / 923 × 100)

149) 자세한 산출과정은 〈부록 V〉를 참조 바람

V. 퇴직연금 세제 개선안

이 장에서는 앞의 제2장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장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제4장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퇴직연금 세제에 대한 개선안을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입단계

가. OECD 수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세제지원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앞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의 지원 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각국가마다 제도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연금상품마다 지원되는 수준도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구체적 수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OECD 통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부족하여 사적연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지금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을 OECD 평균(21.5%)과 우리나라(15.7%)를 비교하면 OECD 평균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¹⁵⁰⁾ 이를 고려하여 OECD의 평균적 지원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수준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

공제수준과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세제지원의 공제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제지원 수준이 악화된 상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세제에 대한 공제 방식을 당장에 소득공제로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공제 방식 변경보다 현행 세액공제율을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상향하여 소득공제 수준의 세제혜택에 상응하도록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OECD 국가의 평균적 세제지원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한 새로운 세액공제율 수준은 다음 식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에서 산출되는 조세지출이 동일하게 하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sum_{i=1}^N C_i \times t_i = \sum_{i=1}^N C_i \times t \quad \Rightarrow \quad t = \frac{\sum_{i=1}^N C_i \times t_i}{\sum_{i=1}^N C_i}$$

단, C_i : 공제대상액, t_i 소득세율(한계세율), t 세액공제율, N : 가입자 수

즉, 좌변은 소득공제 방식에 의해 산출되는 연간 총과세액이며, 우변은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산출되는 연간 총과세액이다. 이 때 연금과세 체계 변화 전후의 총과세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세액공제율(t)을 산출할 필요가 있고, 대략적으로 고려하더라도 OECD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행 12%의 1.4배 수준인 17%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0) 국가마다 퇴직연금제도가 다르고 세제 또한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히 세제지원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음

나. 저소득층 및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앞의 ‘가입시점에서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수준’¹⁵¹⁾에서 보듯이 세제지원 방식이 변경된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자가 줄었다. 그런데, 세제지원방식 변경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제지원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소득계층별 연금세제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인 연간 납부보험료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합산액)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납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정책을 통해 가입유인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가입자가 제도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조치한 후에, 세제지원을 가입자 특성(저소득층, 퇴직 직전 세대)별로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예: 2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앞의 제4장에서 보듯이 정부 계획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방식과 일정으로 추진할 경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해당기간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늦어지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도입 의무화가 추진되더라도 현실적으로 10인 이하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가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수준이 기대 이하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수급 기회도 발생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나타날

151) ‘제2장 제1절 다. 퇴직연금 세제 수준’을 참고 바람

지도 모른다.

한편, 재원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당시 증가된 연금세수분을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퇴직 직전 세대(예: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퇴직연금추가납부액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제3장 해외사례에서 소개한 미국,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추가납입금(Catch-up plan)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 직전 세대(예: 50세 이상)에 대한 퇴직연금 추가납부액 확대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제 대상금액인 연간 700만 원의 평균적인 공제수준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면서 30세 미만 400만 원, 30대 600만 원, 40대 800만 원, 50세 이상 1,000만 원 등과 같이 연령별로 공제대상액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동 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평균수준이 동일하다면 재정지출이 중립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공제 대상금액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상향하되(예: 50세 이상 1,000만 원), 적용대상을 퇴직 직전 세대(예: 50세 이상)로 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득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한 지나친 세제혜택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소득수준(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 대해 적용하되, 수급 시 연금형태의 수급(예: 최소 1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영세사업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

퇴직급여액 중 운전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수준 만큼 대출금리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앞의 제2장¹⁵²⁾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소멸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의무화가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규모 사업장의 소멸을 부추길 우려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52) 제2장 제2절 '다.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보험료 부담'을 참조 바람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영세사업주 부담은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세사업장의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확대 일정보다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¹⁵³⁾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제혜택¹⁵⁴⁾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

2. 수급단계

가. 노후자산형성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앞의 제2장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매우 잦아 퇴직급여의 적립금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¹⁵⁵⁾

충분한 연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중도인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자유화 이후에도 충분한 적립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화 유인이 강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⁵⁶⁾

노후자산인 퇴직급여의 적립금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반납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국민연금의 반납금제도¹⁵⁷⁾를 응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153)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사업주가 많다는 점에서 사업주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험연구원)

154) 사업주에 대한 수수료 지원 및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55) 제2장 제1절 '다. 퇴직연금 세제 수준'을 참조 바람

156) 정원석(2017),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급행태와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정원석(2016),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급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KiRi 리포트』, 제404호, 보험연구원

또한,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 설명한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자산 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나. 퇴직일시금 세제지원 축소와 연금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도입이 일천하여 퇴직적립금이 적고 이로 인해 연금화 유인이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이연퇴직소득의 세제효과¹⁵⁸⁾에 의하면 연금화 유인은 향후 퇴직연금 성숙기에서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화 유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일시금 지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퇴직소득세 산출 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표준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져,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연금화 유인이 약하다.

둘째, 이연퇴직소득을 종신연금으로 지급 시 현행 퇴직소득세의 70%보다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예: 50% 이하). 앞의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속연수 25년으로 2억 원의 퇴직급여가 발생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약 79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동 세금액의 30%(238만 원)를 감면 받아 55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퇴직급여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퇴직소득세 794만 원은 약 4.0%이고, 연금소득세 556만 원은 약 2.8%(세제혜택 238만 원은 1.2%)로 비율적 부담은 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2억 원 이상의 퇴직적립금을 보유한 비율은 2015년 기준 1.3%¹⁵⁹⁾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퇴직급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277만 원¹⁶⁰⁾ 수

157) 국민연금 반납금제도는 과거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에 반납하여 자신의 기여이력을 회복·확대 하는 제도임

158) 제4장 제2절 '나. 소득계층별 이연퇴직소득세 추정 및 효과'를 참조 바람

159) 1억 원 이상의 퇴직적립금을 보유한 비율은 2.8%였으며, 대부분인 78.5%는 1천만 원 이하의 퇴직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됨(2016 국세통계연보, '4-4-2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Ⅱ(퇴직급여액, 과세표준)' 참조)

준이므로 퇴직소득세 자체도 낮지만, 이로 인한 세제혜택 수준도 낮아 연금화 유인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두 안을 고려할 때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수준은 낮추어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높이되,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세제혜택(퇴직소득세의 50% 이하)은 높여 연금화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의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직연금 가입측면의 주요한 환경변화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에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 후자는 2017년 7월 26일 이후 시행되어 향후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퇴직연금 수급측면의 주요한 환경변화는 수급권 보호, 연금화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퇴직연금 세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입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세제지원으로 가입유인이 약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연금수급 유인이 미흡하여 향후에도 일시금 수급을 선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퇴직연금 가입과 수급 환경변화 과정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세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금세제는 연금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퇴직연금 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세제 개편 방향도 문제점 지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입단계에서는 OECD 수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세제지원, 저소득층 및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세사업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제시하였다. 가입단계의 세제 개편은 연금세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급단계에서는 연금형태의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노후자산형성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퇴직일시금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수급단계의 세제 개편은 연금화를 위해 퇴직소득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금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금의 연금계좌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퇴직소득공제 축소와 연금화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있는 모든 경제활동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사업장에 대한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명실상부 전 국민에 적용되는 준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퇴직연금 환경은 더욱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 특히 연금세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세제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KiRi 리포트』, 이 슈분석, 보험연구원
- 강성호 · 권혁진 · 조영은(201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강성호 · 류건식(2016),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 변화와 특징」, 『고령화리뷰』, Monthly 제4호, 보험연구원
- 강성호 · 정원석(2013),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KiRi Weekly』,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 강성호 · 최장훈(2017),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가입률 변화와 향후 과제」, 『고령화리뷰』, Monthly 제8호, 보험연구원
- 구성권(2008), 「연금세제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한국경영 컨설팅학회
- 국세청(2015), 2015 생활세금시리즈
- 김병덕(2011), 「퇴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김수성(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0-1집
- 김용주 · 안중범 · 양성문 · 신상환 · 이충심(2008),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 김원식(2015), 「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연구: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 『리스크관리 연구』, 제26권 제3호, pp. 101~142
- 김원식 · 김재현 · 김우철 · 김상봉(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효과분석」, 한국재정학회
- 김인식 · 류건식 · 김대환(2011),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30권, pp. 19~39
- 근로복지공단(2016),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 류건식(2011. 4), 「개인퇴직계좌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개선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_____ (2016),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방안」, 『고령화리뷰』, Monthly 제 1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대환(2010),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보험동향』, 테마 진단,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상우(2013),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KiRi Weekly』,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 윤성주(2013),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이태열·류건식(2017), 「최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의 종합평가」, 『고령화리뷰』, Monthly 제7호, 보험연구원
- _____ (2017),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방안」, 『고령화리뷰』, Monthly 제5호, 보험연구원
- 정원석(2017),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 정원석·강성호·이상우(2014),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 방안』,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정원석 외(2016), 『금융·보험세제 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 최경진(2015),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법 다양화 방안』,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 근로복지공단
- 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송은주·박수진(2013),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원구(2016), 「퇴직소득 안정화를 위한 퇴직연금 세제의 개선방향」, 『퇴직급여제도 근로자 수급권 보장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관계부처 합동(2014. 8. 27),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Adema, W. and M. Ladaïque(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Paris

ALEXANDER KLING, ANDREAS RICHTER AND JOCHEN RUIß (2014), “ANNUITIZATION BEHAVIOR: TAX INCENTIVES VS. PRODUCT DESIGN”, *Astin Bulletin* 44(3), pp. 535~558

Antolin, P., Pugh, C., and Stewart, F.(2008), “Forms of Benefit Payment at Retirement”,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6, OECD publishing

Axel H. Borsch-Supan, Michela Coppola, Anette Reil-Held(2012), “Rister Pension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ting Success and Crowding-In”, NBER Working Paper 18014

Duflo, Esther, William Gale, Jeffrey Liebman, Peter Orszag, and Emmanuel Saez. (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Engelhardt, Gary V. and Anil Kumar(2007), “Employer Matching and 401(k) Saving: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Feldstein, Martin(1995), “The Effects of Tax-Based Saving Incentives on Government Revenue and National Saving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2, pp. 475~494

Genser, B. and R. Holzmann(2016), “The Taxation of Internationally Portable Pensions: Fiscal Issues and Policy Options”, CESifo Working Paper, no. 5702

- Genser, B.(2015), "Towards an International Tax Order for the Taxation of Retirement Income", CEPAR Working Paper 2015/25, University of South Wales, Sydney
- Glickman, M. and Kuehneman, G.(2006), "Retiree pension payout decisions—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2-2002", Mimeo
- Holzmann, R.(2015), "Taxing Pensions of an Internationally Mobile Labor Force: Portability Issues and Taxation Options", CEPAR Working Paper 2015/27,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 Jessoula M.(2011), "Italy: From Bismarckian Pensions to Multipillarization under Adverse Conditions",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 B. Shoven, David A. Wise(1996), "The Taxation of Pensions: A Shelter can become a trap", NBER Working paper, No. 5815
- Lisa Marriott, Carolyn Fowler(2007), "From Social Policy to Economic Policy: Taxation Incentives for Retirement Income Savings in New Zealand(1910-2005)", *Accounting History*, Vol. 12, No. 1, pp. 87~115
- Mathias Kifmann, Dirk Schindler(2000), "Smoothing the Implicit Tax Rate in a Pay-as-you-go Pension System", *Public Finance Analysis*, Vol. 57, No. 3, pp. 261~283
- Monika Büttler(2002), "Tax-Benefit Linkages in Pension Systems: A note", *Journal of Public Theory*, Vol. 4, No. 3, pp. 405~415
- OECD(2016),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 _____(2016), *Reviews of Pension System: Mexico*
- _____(2016), *Pensions Outlook 2016*
- _____(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s: Country Analysis"

- Pablo Antolin, Alain De Serres, Christine De la Mazonneuve(2004),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ured Retirement Saving Plans”, OECD Pensions Policy Institute(2016), “The Pensions Primer: A Guide to the UK pensions system”
- Philip Booth, Deborah Cooper(2002), “The tax treatment of UK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Fiscal Studies*, Vol. 23, No. 1, pp. 77~104
- Richard A. Ippolito(1990), “An Economic Appraisal of Pension Tax Policy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 Robert Fenge, Martin Werding(2004), “Ageing and the tax implied in public pension schemes: simulations for selected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Applied Public Economics*, Vol. 25, pp. 159~200
- Rocha, R., Vittas, D., Rudolph, H.(2010),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The World Bank
- Rutledge, Matthew S., April Yanyuan Wu, and Francis M. Vitagliano.(2014), “Do Tax Incentives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Working Paper 2014-17,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The Treasury Dept. of Finance Australia(1995), Overview of the Taxation of Superannuation in Australia
- Walter H. Fisher, Christian Keuschnig(2010), “Pension reform and labor market incentiv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3, No. 2, pp. 769~803
- Whitehouse(2006), “Comparing Retirement Saving across Countries: an economic perspective”
- Whitehouse, Edward(2005),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ensions”, The World Bank discussion Paper

부록 I.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록 표 I-1〉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소득공제(2012년, 2013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인원	소득공제액	인원	소득공제액
총급여 규모별	83,691	76,052	60,370	102,089
결정세액이 있는 자	79,035	72,477	56,855	98,549
1천만 이하	12	1	6	2
1.5천만 이하	720	294	431	236
2천만 이하	2,520	1,141	1,811	1,202
3천만 이하	8,681	4,643	6,022	4,563
4천만 이하	10,557	6,134	6,917	7,056
4.5천만 이하	4,786	3,028	3,497	4,737
5천만 이하	4,052	3,017	2,607	3,617
6천만 이하	8,246	6,670	5,388	8,732
8천만 이하	12,071	13,646	9,145	17,525
1억 이하	11,664	13,399	8,197	18,199
2억 이하	14,982	19,080	12,228	31,058
3억 이하	437	839	396	1,026
5억 이하	205	404	147	414
10억 이하	79	133	48	144
10억 초과	23	47	15	36
결정세액이 없는 자	4,656	3,575	3,515	3,539
1천만 이하	318	114	162	72
1.5천만 이하	1,039	647	705	541
2천만 이하	1,181	945	932	987
3천만 이하	1,310	1,111	1,151	1,172
4천만 이하	578	506	425	498
4.5천만 이하	115	127	71	124
5천만 이하	62	57	36	71
6천만 이하	39	48	28	63
8천만 이하	11	16	3	7
1억 이하	1	2	2	5
1억 초과	2	3	-	-

〈부록 표 I-2〉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세액공제(2014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공제대상		공제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급여 규모별	52,042	103,965	52,042	13,107
결정세액이 있는 자	45,274	96,794	45,274	12,043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	-	-	-
2천만 이하	116	19	116	3
3천만 이하	1,380	666	1,380	100
4천만 이하	2,654	3,493	2,654	524
4.5천만 이하	1,849	3,097	1,849	465
5천만 이하	1,987	3,297	1,987	495
6천만 이하	4,680	8,516	4,680	1,132
8천만 이하	9,713	20,467	9,713	2,456
1억 이하	8,387	19,915	8,387	2,390
2억 이하	13,834	35,438	13,834	4,253
3억 이하	449	1,238	449	149
5억 이하	166	489	166	59
10억 이하	45	126	45	15
10억 초과	14	33	14	4
결정세액이 없는 자	6,768	7,171	6,768	1,064
1천만 이하	126	30	126	4
1.5천만 이하	435	204	435	31
2천만 이하	1,233	795	1,233	119
3천만 이하	2,435	2,416	2,435	362
4천만 이하	1,458	1,878	1,458	282
4.5천만 이하	427	688	427	103
5천만 이하	305	489	305	73
6천만 이하	257	477	257	66
8천만 이하	84	174	84	21
1억 이하	2	4	2	-
1억 초과	6	18	6	2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부록 표 I-3〉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세액공제(2015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공제대상		공제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급여 규모	404,850	684,841	404,524	84,751
결정세액이 있는 자	384,071	665,703	383,996	81,929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54	1	54	-
2천만 이하	4,732	204	4,730	31
3천만 이하	27,165	2,894	27,153	434
4천만 이하	35,261	12,769	35,245	1,915
4.5천만 이하	20,042	13,542	20,035	2,031
5천만 이하	20,598	18,201	20,594	2,730
6천만 이하	38,128	44,688	38,119	5,979
8천만 이하	66,898	116,339	66,890	13,961
1억 이하	54,930	128,613	54,918	15,434
2억 이하	107,476	300,492	107,471	36,059
3억 이하	5,504	17,155	5,504	2,059
5억 이하	2,341	7,675	2,341	921
10억 이하	765	2,562	765	307
10억 초과	177	568	177	68
결정세액이 없는 자	20,779	19,138	20,528	2,822
1천만 이하	58	7	58	1
1.5천만 이하	401	72	400	11
2천만 이하	2,699	708	2,686	106
3천만 이하	7,315	4,257	7,229	639
4천만 이하	5,542	6,616	5,459	992
4.5천만 이하	1,708	2,363	1,681	354
5천만 이하	1,390	2,094	1,375	314
6천만 이하	1,238	2,134	1,216	298
8천만 이하	353	697	349	84
1억 이하	24	61	24	7
1억 초과	51	129	51	15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부록 Ⅱ.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와 소득세율

〈부록 표 Ⅱ-1〉 근로소득공제(2016년 기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자료: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부록 표 Ⅱ-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01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산출세액 계산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4,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부록 표 Ⅱ-3〉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2016년 기준)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자료: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부록 표 II-4〉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2016년 기준)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자료: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부록 표 II-5〉 연금소득공제액(2016년 기준)

환산급여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총연금액의 100%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자료: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부록 Ⅲ. OECD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전망

〈부록 표 Ⅲ-1〉 OECD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전망

국가	2010-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Australia	2.9	-	-	-	-	-
Austria	13.9	13.9	14.4	14.7	14.6	14.4
Belgium	11.8	12.7	14.7	15.2	15.0	15.1
Canada	4.9	-	-	-	6.3	-
Chile	5.5	-	-	-	3.8	-
Czech Republic	9.0	9.0	9.0	9.0	9.6	9.7
Denmark	10.3	8.7	8.3	8.0	7.5	7.2
Estonia	7.6	7.6	7.1	6.9	6.7	6.3
Finland	12.9	14.2	15.0	13.6	12.8	12.9
France	14.9	14.6	14.7	13.8	12.8	12.1
Germany	10.0	10.3	11.6	12.2	12.5	12.7
Greece	16.2	15.5	14.4	14.1	14.4	14.3
Hungary	11.5	9.8	8.9	9.6	10.7	11.4
Iceland	3.3	-	-	-	3.5	-
Ireland	7.4	8.0	9.1	10.0	10.0	8.4
Israel	-	-	-	-	-	-
Italy	15.7	15.3	15.7	15.8	14.8	13.8
Japan	11.2	10.5	-	-	-	-
Korea	1.7	-	-	-	12.5	-
Luxembourg	9.4	10.6	11.9	12.7	12.5	13.4
Mexico	1.5	-	-	-	1.3	-
Netherlands	6.9	7.1	7.7	8.3	8.1	7.8
New Zealand	5.5	-	-	-	7.3	-
Norway	9.9	10.7	11.3	11.4	11.6	12.4
Poland	11.3	10.6	10.4	10.0	10.4	10.7
Portugal	13.8	14.6	15.0	14.8	14.4	13.1
Slovak Republic	8.1	8.0	7.6	8.1	9.1	10.2
Slovenia	11.8	11.1	12.3	14.3	15.6	15.3
Spain	11.8	11.8	11.2	11.9	12.3	11.0
Sweden	8.9	8.3	7.9	7.5	7.2	7.5
Switzerland	9.6	-	-	-	10.7	-
Turkey	6.3	-	-	-	17.0	-
United Kingdom	7.7	7.4	7.9	8.4	8.1	8.4
United States	4.9	-	-	-	6.1	-
OECD	9.0	-	-	-	10.1	11.3
EU28	11.3	11.2	11.6	11.7	11.4	11.2

부록 IV. 퇴직소득세 산출 및 세제혜택

- 가정: 퇴직금 2억, 근속연수 25년인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¹⁶¹⁾
 - 근속연수공제: [1,200만 원 + 120만 원 × (25 - 20)] = 1,800만 원
 - 퇴직소득: 2억 - 1,800만 원 = 18,200만 원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18,200만 원 / 25 × 12 = 8,736만 원
- 퇴직소득과세표준¹⁶²⁾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¹⁶³⁾
 - = [(퇴직금(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8,736만 원 - 4,520 + (8,736 - 7,000) × 55%
= 8,736만 원 - (4,520 + 955) = 8,736 - 5,475 = 3,261만 원
- 환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환산퇴직소득세 = 3,261만 원 × 누진세율
= 72 + (3,261 - 1,200) × 15%
= 72 + 2,061 × 15% = 72 + 309 = 381만 원
- 최종퇴직소득세¹⁶⁴⁾ = 환산퇴직소득세 / 12 × 근속연수
 - 최종퇴직소득세 = 381만 원 / 12 × 25년 = 32만 원 × 25년 = 794만 원

161)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16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163)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164) 2016년부터 변경되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부록 V.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의 연금 세제 지원액 산출

1. 연간지원액 = 대상자 규모 × 1인당 조세지원액(연)

- 대상자 규모: 통계청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등을 활용하여 산출(본문 참고)
- 1인당 조세지원액 = (생애)순세제혜택 / 납입기간

2. (생애)순세제혜택 등 세부사항 산출 과정

- (연간)순세제혜택(tax_benf) = (생애)순세제혜택(tax_benf) / 납입기간($term_cont$)
- (생애)순세제혜택(tax_benf) = (생애)세액공제($tded$) - (생애)연금소득세($tpentax$)
 - (생애)세액공제($tded$) = (생애)적립액($fund$) * 세액공제율($rded_pen$)**
 - * (생애)적립액($fund$) = (연간)납입액($ycont$) × 납입기간($term_cont$)
 - **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12~15% 적용
 - (생애)연금소득세($tpentax$) = (연간)연금소득세($ypentax$) × 수령연수($term_benf$)
 - (연간)연금소득세($ypentax$) = (연간)연금소득금액($ypeninco$) * 연금소득세율($rtax_pen$)
 - * (연간)연금소득금액($ypeninco$) = (연간)총연금액($ypen$)** - 연금소득공제($ydeduc$)***
 - ** 연간총연금액($ypen$) = 생애적립액($fund$) / 수령연수($term_benf$)
 - *** 연금소득공제($ydeduc$): 퇴직급여 산출방식에 따라 연간총연금액($ypen$) 금액별로 적용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운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중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저자약력

강성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김동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dg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67-1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